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2014. 12.

보건복지부

- 이 매뉴얼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18호)」을 근거로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정보체계, 부처·기관의 책임과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실무매뉴얼 작성기관은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책임과 역할에 따라 「감염병」 위기 발생시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와 제반 조치사항이 수록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함.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 다만,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 재난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가급적 재난이 발생하면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경계, 주의 등으로 적절히 경보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절한다.

매뉴얼 제 · 개정 현황

승인일자	주요 개정 내용	개정 근거	담당부서
2010.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경보 대상 질병을 해외 재출현 전염병까지 확대 관리토록 조정 • 경계→심각, 심각→경계 단계 조절시 대통령실과 행안부와 사전 협의 • 유관기관의 역할 신설 및 강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행정안전부)을 심각단계로 조정(중전 주의단계)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일제정비 행정안전부 재난대책과-1304 (2010.6.14.)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과)
2011.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개정 등에 따라‘전염병’을‘감염병’으로 일괄 수정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 홍보 및 소통강화를 위한 위기경보 단계별 홍보활동 매뉴얼 추가 	국가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정비요청 행정안전부 재난대책과-260 (2011.2.10.)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2012.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유형별 기관의 임무역할 수정 및 보완 (행정안전부, 식약청 등) 	2011국가위기관리 매뉴얼 점검·개선 계획 통보 행정안전부 재난대책과-3255 (2011.12.16.)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2012.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대응체계 및 유관기관과의 임무·역할 정비 • 제·개정 목록 현황 작성 등 	국가위기관리매뉴얼 일제 정비계획 행정안전부 재난대책과-2696 (2012.11.16.)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2013.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가위기관리매뉴얼 정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매뉴얼 변경 안전행정부 재난역량지원과-13 (2013.3.27.)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2013.1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관리 단계별 정부기관의 역할 수정 • 위기단계별 주요 조치 신설 • 감염병 발생시 국민행동 요령 부록신설 • 재난발생시 초기대응 주요 사항 부록신설 	안전행정부 매뉴얼 검토 결과 안전행정부 국가기반보호과-774 (2013.6.26.)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2014.6.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유형 개정 • 위기경보 발령 기준 개정(심각단계) • 유관기관 확대 및 임무·역할 정비 등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 등에 따른 표준매뉴얼 현행화 통보 안전행정부 재난역량지원과-204 (2014.1.27.)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2014.1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 개편(2014.11.19.)에 따른 현행화(기관명칭, 전화번호 등)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관 회의 참석 요청 국민안전처 사회재난대응과-70 (2014.12.4.)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목 차 -

I. 일반 사항

1. 목적	2
2. 적용 범위	2
3. 관련 법규	3
4. 용어 정의	4

II. 위기 유형 및 경보

1. 위기 유형	7
2. 전개 양상	7
3. 위기 경보	8
가. 위기 경보 수준	8
나. 위기 경보 절차	9

III. 위기관리 기본방향

1. 목표	12
2. 방침	12
3. 위기관리 체계	13
가. 종합체계도	13

나. 위기관리 기구 및 역할	14
다. 보건복지부 대응체계	15

IV. 위기관리 활동

1. 예방	18
가. 중점	18
나. 세부 활동내용	18
다. 기관별 임무·역할	19
2. 대비	20
가. 중점	20
나. 세부 활동내용	20
다. 긴급지원체계의 사전 점검 및 보강	21
라. 위기경보 수준별 기관의 임무·역할	22
3. 대응	36
가. 중점	36
나. 세부 활동내용	36
다. 위기유형별 기관의 임무·역할	37

4. 복구	41
가. 중점	41
나. 세부 활동내용	41
다. 기관별 임무·역할	42

V. 중앙사고수습본부 즉시가동 준비사항 및 본부장 역할

1. 즉시가동을 위한 단계별 사전준비 사항	44
2. 즉시가동을 위한 조치목록별 사전준비 사항	47
3.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역할	48

VI. 부록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51
2. 재난발생시 초기대응 주요 사항	53
3. 감염병 분야 위기사례	55
4.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58
5. 재난방송관련 위기상황 전파체계	66
6. 관련기관	74

I. 일반 사항

1. 일반 사항

1. 목적

이 매뉴얼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보전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지는 대규모 사태에 대한 범정부적 위기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 및 기관별 활동 방향을 규정한 것임

2. 적용 범위

가. 감염병 위기관리 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정부 부처·기관의 활동에 적용하며 보건복지부가 대응·수습 주관부처 역할 수행

나. 본 매뉴얼은 보건복지부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다음의 위기상황에 적용

(1) 신종 감염병 환자가 공항·항만 등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 유입,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2) 국내에서 신종·재출현 감염병으로 인해 대규모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 신종인플루엔자 등

3. 관련 법규

가. 근거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18호)

나. 관련법령

-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2) 보건의료기본법
- (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 (4) 검역법
- (5) 의료법

다. 관련 규정, 지침 등

- (1) 감염병관리사업지침
- (2)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 (3)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계획
- (4)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 지침
- (5) 검역업무지침
- (6)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지침

4. 용어 정의

용어	정의
국가위기	국가 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위기관리	국가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
주관기관	위기유형별 위기관리 활동의 주된 책임을 지는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	위기유형별 정부의 위기관리 활동에 있어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실무기관	위기관리의 대상이 되는 기능·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
위기 관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예방 : 위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② 대비 : 위기 상황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준비·교육·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③ 대응 : 위기 발생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④ 복구 :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활동
위기 경보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관심(Blue) :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서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 ② 주의(Yellow) : 위기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국가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 ③ 경계(Orange) : 위기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④ 심각(Red) : 위기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국가위기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

용 어	정 의
신종·재출현 감염병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감염병 및 기존에 알려진 감염병이나 타인에 감염 우려가 높은 감염병
해외 유입 감염병	해외에서 국내 유입이 가능하거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각종 감염병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감염병 의사환자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병원체 보유자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2차 전파	감염질환에 걸린 환자를 통해 주위 접촉자들이 추가 감염되는 경우
환자격리	타인의 감염을 막기 위해 감염자를 일정기간 격리시설에 수용, 입원시켜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
인수공통 감염병	동물과 사람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감염	병원체가 사람의 몸에 침입하여 질병을 유발 시키는 모든 경우를 총괄함
전염	병원체를 보유한 감염자가 타인에게 해당 병원체를 전파시키는 경우를 총괄함
역학조사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검역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선박·항공기·차량 및 그 승객·승무원·화물 등에 대하여, 감염병의 유무를 검사하고 소독하는 일
방역물자	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호 장구, 소독약품, 진단시약, 검사 장비 등 모든 물품을 총괄함

II. 위기 유형 및 경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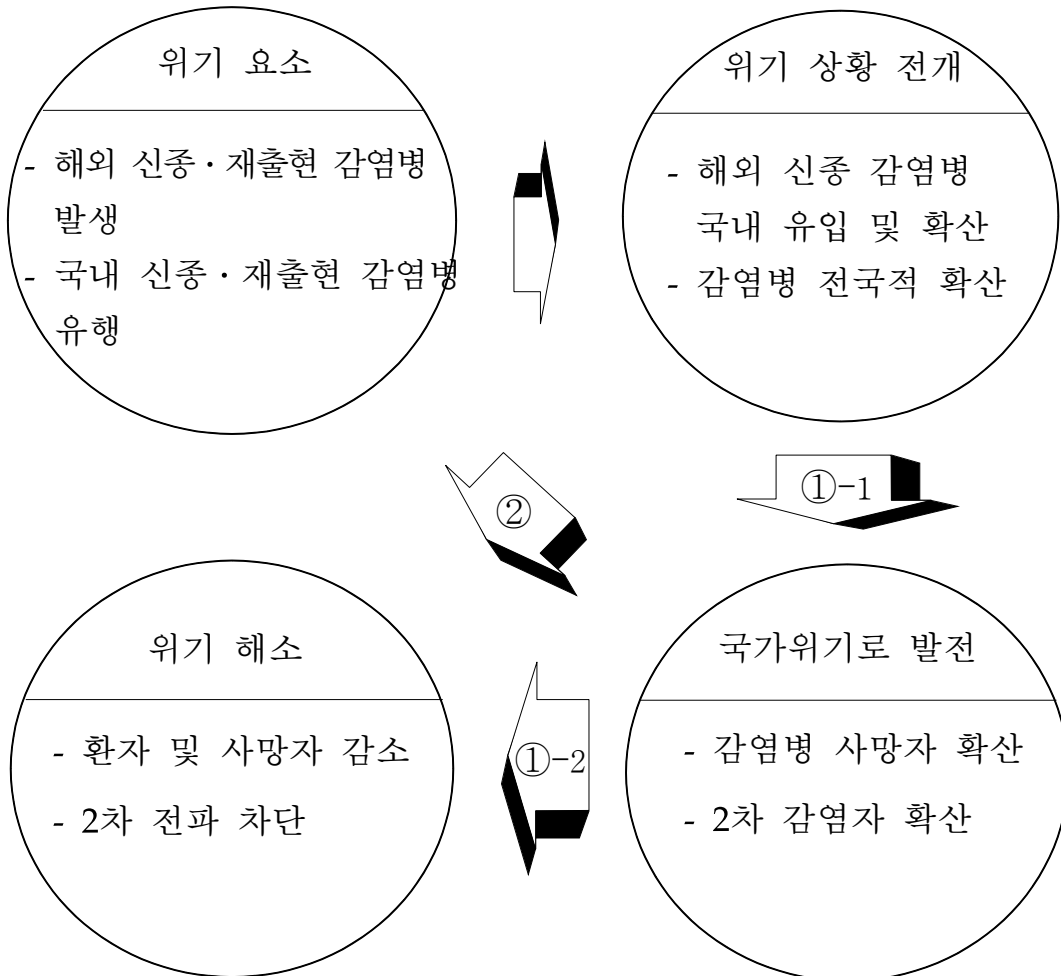
II. 위기 유형 및 경보

1. 위기 유형

가. 해외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나.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

2. 전개 양상



3. 위기 경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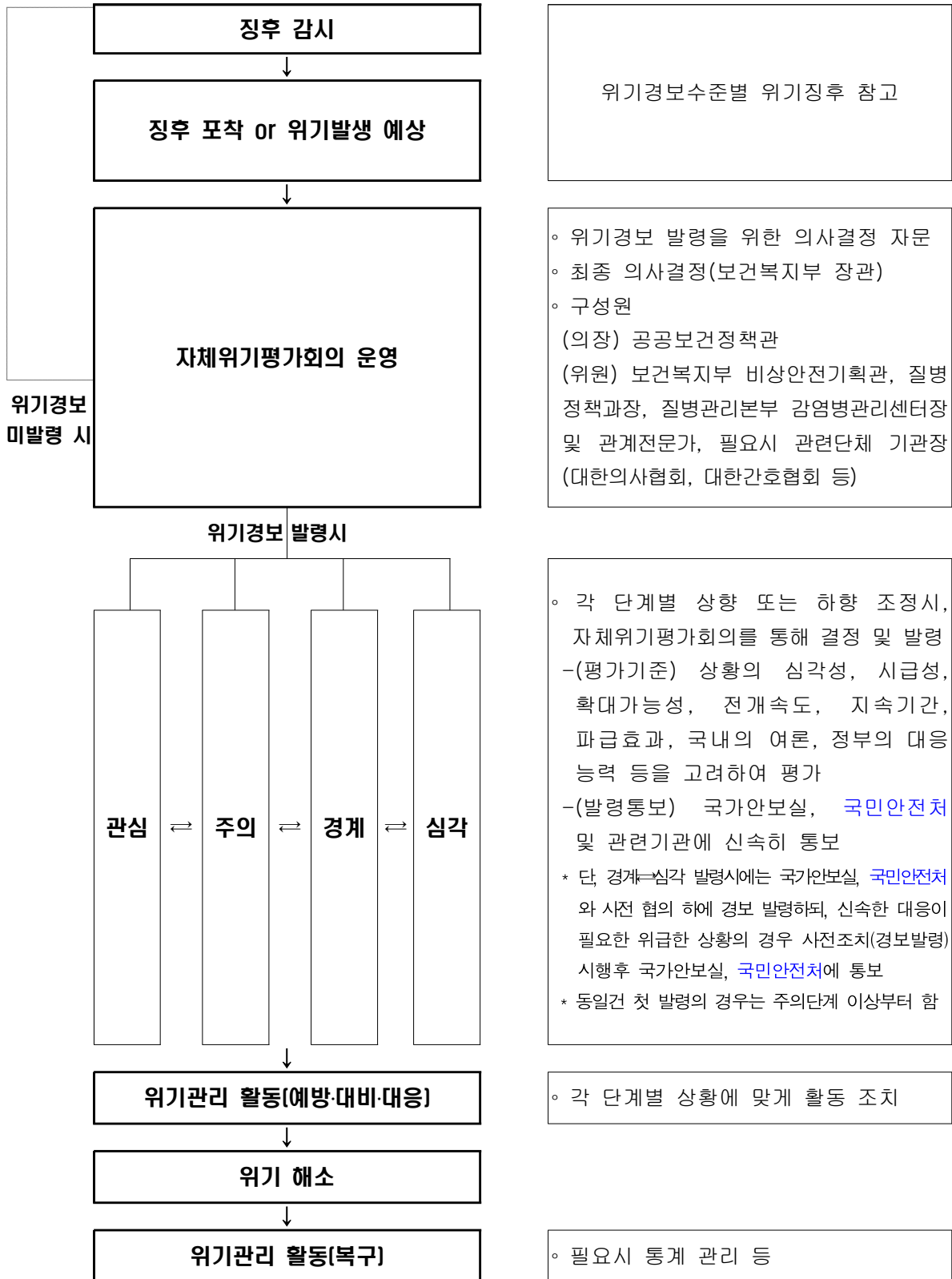
가. 위기 경보 수준

수 준	내 용	비 고
관심 (B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의 신종감염병 발생 ○ 국내의 원인불명 감염환자 발생 	<p>징후활동감시 대비계획점검</p>
주의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 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주의보 발령 ○ 국내에서 신종·재출현 감염병 발생 	<p>협조체제가동</p>
경계 (Or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후 타 지역으로 전파 ○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 타 지역으로 전파 	<p>대응체제가동</p>
심각 (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신종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 국내 신종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 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p>대응역량총동원</p>

나. 위기 경보 절차

- (1) 주관기관(보건복지부)은 소관분야에 위기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협 또는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운영하고 평가 및 판단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
- (2) 위기수준 평가시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의 여론, 정부의 대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 (3) 주관기관(보건복지부)은 위기경보 발령시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국민안전처** 및 관련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범 정부차원의 평가와 조치가 요구되는 수준(심각)의 경보 발령시에는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및 **국민안전처**와 사전 협의 하에 경보 발령
- (4) 위기경보 수준(경계→심각, 심각→경계)을 수정 및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과 **국민안전처** 및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
- (5) 제3,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위급상황의 경우 사전조치(경보발령)를 시행한 후 즉시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국민안전처**에 통보

<위기 경보 발령 절차>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1. 목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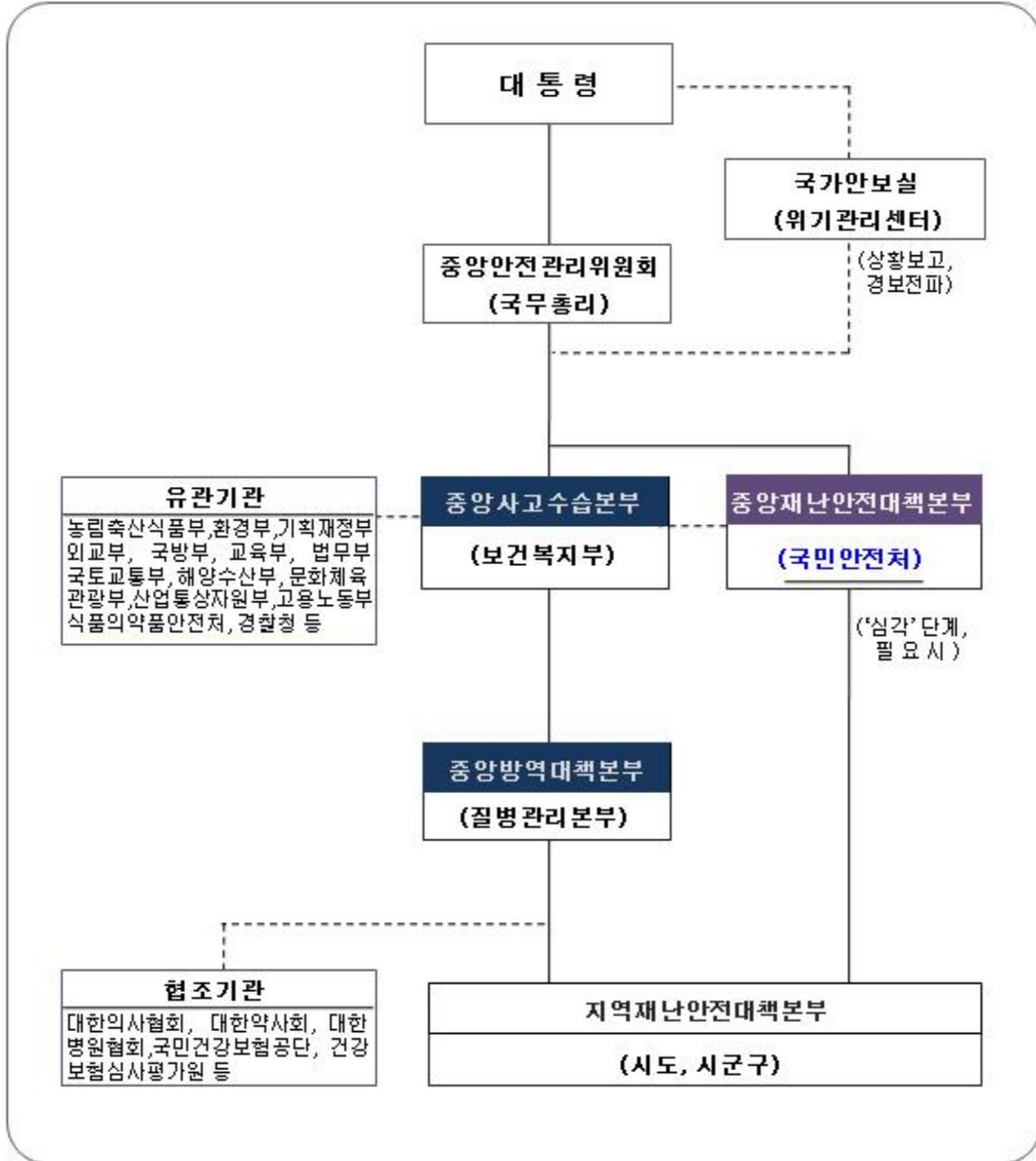
- 가. 감염병 분야 위기에 대한 예방·대비 체제를 강화하고, 대응태세를 사전에 마련하여 위기를 최소화
- 나. 감염병 분야 위기로 인해 예상되는 국민 건강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 다. 위기단계별로 언론홍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이행하여 대국민 정보공유 및 소통강화를 도모

2. 방 침

- 가. 단계별 국가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상황발생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적절하고 신속하게 방역대책을 추진
- 나. 전국 공항·항만·육로검역소를 통한 국내 입국자에 대한 검역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발생에 대비하여 주요 의료기관, 민간 자문기관 등을 통해 조기경보 체계 구축
- 다. 평시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가동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즉각적으로 방역대책을 추진하여 추가 확산을 조기에 차단
- 라.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발생 이전부터 격리병원 확보, 방역 비축물자 관리 등 국가방역 인프라 구축
- 마. 전국 방역기관(질병관리본부, 시·도 및 보건소, 13개 검역소) 및 관련기관에서 범정부적 대책기구 설치·운영 등을 통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바. 위기발생시 방역요원 부족에 대비하여 대체인력 확보계획을 마련하고 즉각적인 현장투입을 위한 사전교육 시행
- 사. 위기상황 발생시 부서간 공조 강화 및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체 다양화·신속화로 대국민 소통 강화

3. 위기관리 체계

가. 종합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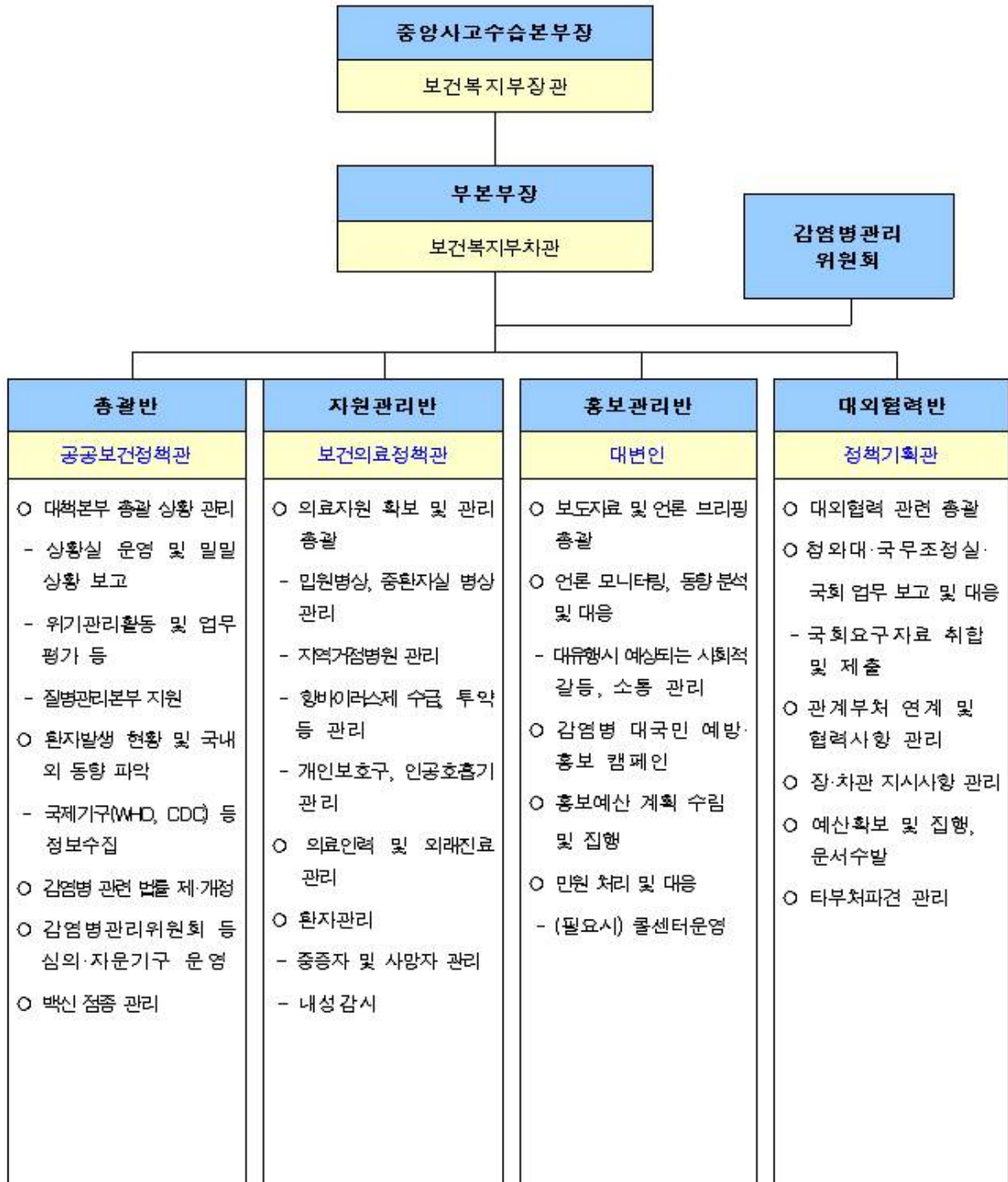


나. 위기관리 기구 및 역할

구 분	역 할
중앙사고수습본부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및 상황전파 ○ 자체 위기평가회의 및 대책회의 등 운영 ○ 신속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 상황 수습을 위한 인프라 지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지침 마련 등 기본감염병관리대응대책 수립 ○ 대책회의 및 자문회의 운영 ○ 시도, 시군구, 검역소 대책반 운영 총괄, 조정 및 지시 ○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및 상황전파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국민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활동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 ○ 대책회의 및 자문회의 운영 ○ 재난예방 및 응급대책 등 재난대비계획 수립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및 건의 ○ 재난 현장 대응활동 종합 및 조정 ○ 중앙수습지원단 구성 및 필요시 현장 파견 등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별 사고 상황 파악 및 대응 ○ 대책회의 및 자문회의 운영 ○ 지자체 유관기관별 협조체계 구축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방역대응 인프라 협조·지원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정보·상황 관리 ○ 유형별 심각 단계 경보 발령시 사전 협의
중앙안전 관리위원회 (국무조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조정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심의 ○ 중앙행정기관간 재난·안전관리업무 협의·조정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선포 등 건의사항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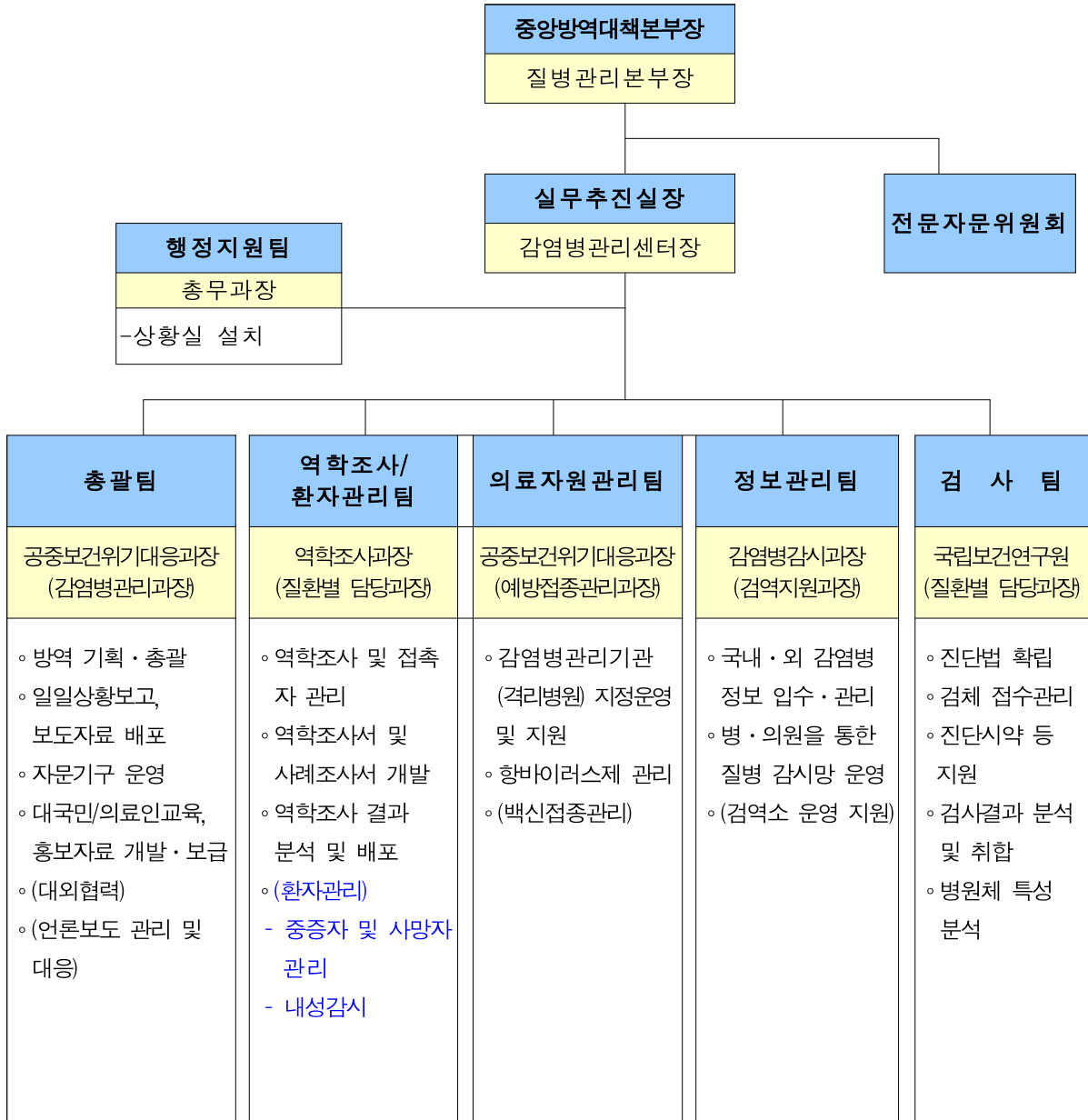
다. 보건복지부 대응체계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심각단계)



* 단, 상황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운영



* 단, 상황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IV. 위기관리 활동

IV. 위기관리 활동

1. 예 방

가. 중점

◆ 국내 감염병 유행의 사전 예측과 국가방역인프라 구축을 통해 위기 발생시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마련

나. 세부 활동내용

- (1) 국가 감염병 유행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관리 인프라 구축 및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
- (2) 감염병 유행절기별 예방·홍보 및 병·의원 네트워크를 통한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 (3)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국민 면역력 제고
- (4) 예방·치료약품 비축, 검사·진단장비 및 진단기술 확보
- (5) 국가감염병관리요원 및 보건의료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기본 대응능력 배양
- (6) 국제적 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해외 감염병 발생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입수 및 선진 국가와의 공동연구 수행
- (7) 질병별 대응매뉴얼 수립을 통해 위기상황시 즉각적인 대응체계 구축
- (8) 국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을 통해 감염병 발생시 국민들의 대처능력 배양

다. 기관별 임무·역할

구 분	기 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강구 ○ 유관기관 상황실과 24시간 상황 연계 ○ 상황분석 및 각종정보 수집·전파 ○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감염내과 및 응급 의료센터 연계 ○ 신속한 감별진단을 위한 실험실 진단체계 구축 ○ 국민 예방 접종률 향상 ○ 전국 방역요원과의 24시간 비상 연락망 구축 ○ 감염병 환자 이송 및 진료체계 구축 ○ 국제 공조체제 유지 ○ 유관기관 상호협력, 조정 체계 구축 ○ 보건 의료인 및 국민에 대한 교육 및 예방·홍보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 실무·행동매뉴얼 관리실태 점검·개선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매뉴얼 관리실태 점검·개선 ○ 재난관리 교육·훈련 실시 ○ 감염병 환자 이송체계 가동·점검 및 개인보호구 등 장비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가축방역 대책 추진 ○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가축질병 발생시 정보제공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매개 가능성 높은 야생동물 질병 관리 대책 추진 ○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야생동물 질병 발생시 정보제공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방역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장병 감염병예방관리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학원 등 감염병예방관리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업무지속계획(BCP) 수립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에 대한 감염병 관리 및 홍보·교육
국가안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정보·상황종합관리,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링
국무조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분야 정책관리·조정 ○ 관련 동향 종합 평가

2. 대 비

가. 중점

◆ 감염병 분야 위기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식별하여 위기경보 수준별로 적극적 대응

나. 세부 활동내용

- (1) 감염병 유행 등 국가위기 발생시 경보등급별로 단계별 대응체계
- (2) 검역장비, 진단장비, 환자관리시설, 비축물자에 대한 점검 및 가동
- (3) 감염병 자문위원회 및 관련 민간단체(병협, 의협 등) 합동으로 대응체계 가동
- (4) 병원내 조기경보체계 운영 등 계절별 유행 우려 질병에 대한 집중감시 및 경보체계 가동
- (5) 위기수준 단계별로 대국민 홍보활동 및 정부시책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 (6) 감염병 분야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검토

다. 긴급지원체계의 사전 점검 및 보강

구 분	주요 내용
검역 대책	· 해외유입차단을 위한 입출국자 검역 및 홍보 대책
환자감시 대책	· 진단기준 마련 · 의료기관 신고·보고 체계 확립
실험실 진단 대책	· 진단검사체계 구축 · 실험실 감시체계 확립
역학조사 대책	· 역학조사 지침 개발 · 역학조사 업무 흐름도 정비
환자 등 관리 대책	· (의심)환자 및 접촉자 관리 지침 개발 · 환자 이송 및 진료체계 구축
예방접종관리 대책	· 국내 백신 가동체계 점검 · 백신 수급 계획
인력 확보 대책	· 의료진 동원 계획 · 방역(검역) 인력 운용 계획
시설, 장비 및 비축물자 대책	· 검역장비, 진단장비 정상작동 여부 등 점검 · 감염병관리시설(격리병원) 가동 계획 · 비축물자(예방·치료약품, 개인보호구) 점검 및 활용 계획
국내·외 협력 대책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및 협조체계 정비 · 국외 협조체계 정비
언론 대응 대책	· 감염 예방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계획 · 언론모니터링 및 동향 분석 계획

라. 위기경보 수준별 기관의 임무·역할

(1) 관심(Blue)

① 징후 및 기관별 임무/역할

구 분		내 용
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의 신종·재출현 감염병 발생 ○ 국내의 원인불명 감염환자 발생
기관별 조치 내용	보건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신속 파악·평가, 위기경보 발령 및 대응방안 강구 <질병관리본부> ○ 상황모니터링 및 평가 ○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감염내과 및 응급 의료센타를 통한 감염병 환자 발생 모니터링 - 시·도/보건소의 지역별 환자발생 동향 감시 강화 - 검역소의 국내 입국자에 대한 감염병 환자 발생동향 감시 강화 ○ 국가방역인프라 가동 준비태세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병원, 격리소, 검역장비, 보호장구, 진단장비 등 ○ 감염병 환자 이송 및 진료체계 준비 및 점검 ○ 전국 방역요원 비상 연락망 점검 ○ 유관기관 상호협력, 조정 체계 구축 ○ 보건 관계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실시 ○ 감염병 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 ○ 실험실 진단체계 구축 ○ 감염병 발생 원인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국민 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경보 발령문서 접수 및 상황보고 ○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유관부서 및 자치단체 조치사항 통보 ○ 지역별 동향파악, 수집자료 분석·보고 및 전파 (중앙소방본부) ○ 국내 감염병 환자 이송체계 가동 지원 ○ 감염병 환자 이송 정보 주관기관 신속 전파 (해양경비안전본부) ○ 경비함정 자체 방역 활동 강화 및 방역장비 비축 확인

구 분	내 용
농림축산 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감염병 유발 농수산물 수입 현황 등 파악 ○ 공·항만 국경검역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지역 노선 검색 - 수입 농수축산물 및 동식물 검역 ○ 필요시 예찰협의회 운영 등 예찰업무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예찰협의회 개최 및 임상관찰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동물 폐사체 발생 시 질병검사 ○ 질병 관련 야생동물 국내 유입 여부 및 경로 조사 ○ 야생조류 폐사체 모니터링 강화 ○ 주요 감염의심 야생동물 서식지에서 사전예방조치 실시 ○ 시·도 야생동물 구조관리 센터별 야생동물 질병 관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심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질병검사 실시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 감염병에 대한 내용, 발생장소 등 재외공관 보고내용을 유관기관에 전파 ○ 감염병 발생국가 여행경보단계 조정 ○ 주재국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체계 가동 ○ 관할 재외국민 보호조치 강구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국인 출입국기록 제공 등 지원(주관기관 지원 요청시)
국토 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운수업 관련 단체 경보전파 및 이상 징후 승객 신고 지시 ○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자 및 감염 예방대책 실시 현황 파악 ○ 문제인식 공유 및 공동대책 마련을 위한 공항운영협의회 개최
해양 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 밀항자 격리 등 ○ 항만을 통한 출입자 통제 및 질서유지
문화 체육 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여행객 예방홍보
식품의약 품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치료제 등 허가·생산 현황 파악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지원으로 사회 질서유지 ○ 환자 등 추적 관리 대상자 거주여부 확인 요청 시 협조 ○ 전의경 건강관리 강화 ○ 재난관리부대 인원·장비 점검
국가 안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정보·상황종합관리,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링
국무 조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동향 모니터링 ○ 정부 대처방향 검토
시도 및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모니터링,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가동 ○ 비상연락망 점검 등 환자 발생 대책 수립

② 주요 조치내용(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국내외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보고·전파
 - 관심 단계의 위기징후 포착 및 위기상황을 접수받은 경우, 상황파악 후 동 사항을 질병관리본부장 및 보건복지부장·차관에게 보고(필요시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 관심단계 위기징후(해외의 신종·재출현 감염병 발생 등) 평가
 - 별도의 관심단계 경보발령을 위한 자체위기평가회의는 미개최
 - * 단, 관심→주의, 주의→관심 단계로 상·하향 조정을 위한 자체위기평가회의는 개최

위기경보 발령(관심단계)에 따른 대응조치

- 국내외 발생상황 모니터링 및 동향 보고
- 방역 대응태세 및 인프라 정비
 - 검역소 및 시·도(시·군·구 보건소) 및 유관기관 비상방역체계 점검
 -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점검
 - 실험실 진단검사 체계 점검
 - 역학조사 체계 점검
 - 환자 이송 및 진료체계 점검
 - 시설, 장비 및 비축물자 점검
 - 신종감염병 대응지침 개발
- 감염 예방 대국민 홍보

위기경보 해제 및 후속조치

- 해제 결정 및 전파
 - 관심단계 위기징후(해외의 신종·재출현 감염병 발생 등) 평가
 - 별도의 관심단계 위기경보 해제는 미 실시

(2) 주의(Yellow)

① 징후 및 기관별 임무/역할

구 분	내 용
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 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주의보 발령 ○ 국내에서 신종감염병 발생 및 지역별 재출현 감염병 발생
기관별 조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 평가 및 위기경보 발령 ○ 각 기관별 비상방역 체계 점검 ○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체 구성 및 협조 요청 <p><질병관리본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운영 등 정부 비상 대응체계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감염병 발생 일일상황 점검 및 일일 동향 보고 ○ 국가방역인프라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격리, 검역강화(발열감시 및 추적조사 등)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 ○ 감염병 전문 자문위원회 회의 소집 정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감염병 관리방안 및 대책 마련 ○ 감염병 환자 감시체계 및 치료대응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병·의료기관 및 감염내과 네트워크 구성·운영 - 의약품·장비 등 비축 및 공급 ○ 실험실 진단체계 강화 ○ 대량환자 발생 대비대응책 마련 ○ 감염병 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 지속 및 언론 브리핑 ○ 언론모니터링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과 언론등 여론 파악 -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
국민 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경보 발령문서 접수 및 보고·전파 ○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유관부서 및 자치단체 조치사항 통보 ○ 지역별 동향파악, 수집자료 분석·보고 및 전파 (중앙소방본부) ○ 국내 감염병 환자 이송체계 가동 지원 지속 ○ 해외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에 따른 환자·접촉자 이송 체계 지원(검역소·보건소 등 감염병 초동대응기관 지원 요청시) ○ 감염병 환자 이송 정보 주관기관 신속 전파

구 분	내 용
	<p>(해양경비안전본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 밀항자 격리 등 ○ 항만을 통한 출입자 통제 및 질서유지
농림축산 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가축질병 발생동향 감시·예찰 체계 운영 강화 ○ 필요시 가축방역협의회 개최를 통해 위협 및 위협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각 부처·기관 등에 통보 ○ 위기상황 모니터링, 역학조사/정밀진단 강화(시·도 협조) ○ 검역·검사 활동 및 여행객 홍보 강화 ○ 시도 관내 발생농가 등에 이동제한 조치 ○ 시도 관내 농가 등에 대한 소독 철저 및 예찰활동 실시 등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가능성 높은 동물의 이동경로와 개체군 조사 ○ 감염 가능성 높은 야생동물의 정밀검사 및 역학조사 실시 ○ 주요 감염 야생동물 서식지 출입 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감염병대응 예산(예비비) 편성 및 지원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 입수 ○ 재외국민에 대한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 ※ 공관 홈페이지 및 한인단체 등을 통한 안내문 배포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인력에 대한 예방조치시행 ○ 군 인력 및 시설지원 준비태세 점검 ○ 군병원 응급실/중환자실 감염병 감시체계 시행 ○ 감염병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각 군 의무대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파병장병 포함)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학원 등 감염병예방관리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국인 출입국기록 제공 등 지원 및 출입국관리 강화 대책 시행
국토 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 철도, 선박, 버스 등 종사자 및 여행객(승객)에 대한 예방관리
해양 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종사자 및 여행객(승객)에 대한 예방관리
문화 체육 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관련 대국민 홍보
산업통상 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업무지속계획(BCP) 수립

구 분		내 용
고용노동부		○ 근로자에 대한 감염병 관리 및 홍보·교육
식품의약 품안전처		○ 감염병 치료제 등 신속 허가·검정 방안 검토 ○ 감염병 유발 의심 (수입)식품 관리 방안 검토
경찰청		○ 국가필수시설(비축물자 보관관리 시설 등) 경비 지원 ○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지원으로 사회 질서유지 ○ 가용 범위 내 인력지원 및 전·의경 감염병 예방관리 ○ 환자 등 추적 관리 대상자 거주여부 확인 요청 시 협조
국가 안보실		○ 위기정보·상황종합관리,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링
국무 조정실		○ 정부 대처방향 제시 ○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
시도 및 시군구		○ 유행지역 시·도, 시·군·구 지역재난 안전대책 본부 설치 ○ 감염병 감시 및 관리 강화

② 주요 조치내용(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국내외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보고·전파
- 질병관리본부장이 주의 단계의 위기징후 포착 및 위기상황을 접수받은 경우, 상황파악 후 동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차관에게 보고(필요시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 회의 소집
 - 주의 단계의 위기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협 또는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자체위기평가회의」 운영
- 위기상황 평가 및 대응전략 검토
 -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외 여론, 정부의 대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위기경보 발령 및 보고·통보
 - 위기상황 분석·평가 후, 위기경보수준(관심 유지 또는 주의 사항)이 결정되면, 위기평가회의 의장(공공보건정책관)은 동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차관에게 보고한 후 발령
 - 질병관리본부장은 위기발령시(주의 사항) 신속하게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국민안전처(재난관리총괄과, 사회재난대응과) 및 시·도 등 유관기관에 통보

(주의단계)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조치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 운영
- 국내외 발생상황 점검 및 동향 보고
- 방역 대응태세 및 인프라 재정비
 - 검역소 및 시·도(시·군·구 보건소) 및 유관기관 비상방역체계 강화
 -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강화
 - 실험실 진단검사 체계 강화
 - 역학조사 체계 강화
 - 환자 이송 및 진료체계 강화
 - 시설(감염병관리시설) 가동 및 장비(검역장비, 진단장비) 점검 강화
 - 비축물자(예방·치료약품, 개인보호구 등) 지원
 - 신종감염병 대응지침시달
-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국민동요방지 및 감염예방 대국민 홍보
- 자문위원회 운영

(3) 경계(Orange)

① 징후 및 기관별 임무/역할

구 분		내 용
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신종 재출현 감염병의 국내 유입후 타 지역으로 전파 ○ 국내 신종감염병의 타 지역으로 전파 및 대규모 재출현 감염병의 타지역 전파
기관별 조치 내용	보건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 평가 및 위기경보 발령 ○ 각 기관별 비상방역 가동 협조체계 준비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준비 <p><질병관리본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책본부 구성 운영 및 범정부적 협조체계 구축 (필요시 관련 협조기관 업무지원) - 협조기관 업무지원(필요시) ○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 국가 방역체계 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방역요원 24시간 비상 방역체제 등 ○ 국가 방역·검역 인력 보강 검토 ○ 치료제 등 비축물자의 수급체계 적극가동 ○ 실험실 진단체계 운영 및 변이주 감시 강화 ○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및 언론 브리핑 ○ 언론모니터링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과 언론 등 여론 파악 -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
	국민 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 ○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사항을 유관부서 및 지자체 등에 통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준비 (중앙소방본부) ○ 감염병 환자 이송체계 가동 지원 강화 ○ 감염병 환자 이송 정보 주관기관 신속 전파 (해양경비안전본부) ○ 검역, 밀항자 격리 등 ○ 항만을 통한 출입자 통제 및 질서유지

구 분	내 용
농림축산 식품부	○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 종식을 위한 가축방역활동 강화 ○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환경부	○ 야생동물 서식지 및 주변지역 출입 통제
기획 재정부	○ 국가 감염병대응 예산(예비비) 편성 및 지원
외교부	○ 해외 감염병 정보 신속 입수 및 전파 ○ 감염병 발생 국가의 재외국민에 대한 예방 교육
국방부	○ 군 인력 지원 및 군병원 활용 협조 ○ 군 인력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부	○ 학교 및 학원 등 감염병 예방관리 ○ 학교 휴교·휴업 및 학원 휴원 검토
법무부	○ 내·외국인 출입국기록 제공 등 지원
국토 교통부	○ 항공기 감편 내지 운항 조정 등 ○ 항공 종사자, 여행객에 대한 방역 활동 ○ 철도, 대중교통, 화물 등 종사자, 승객에 대한 방역 활동
해양 수산부	○ 여객선 감편 내지 운항 조정, 외국인 선원 출입국 제한 등 ○ 선박 종사자, 여행객에 대한 방역 활동
문화체육 관광부	○ 문화, 체육, 관광 관련 대규모 행사 자제 조치
산업통상 자원부	○ 기업 업무지속계획(BCP) 가동 준비
고용 노동부	○ 근로자에 대한 감염병 관리 및 홍보·교육
식품 의약품 안전처	○ 감염병 치료제 등 신속 허가·검정 ○ 감염병 유발 의심 (수입)식품 검사
경찰청	○ 국가필수시설(비축물자 보관·관리 시설 등) 경비 지원 ○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지원으로 사회 질서유지 ○ 가용 범위 내 인력지원 및 전·의경 감염병 예방관리 ○ 환자 등 추적 관리 대상자 거주여부 확인 요청 시 협조
국가 안보실	○ 위기정보·상황종합관리,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링
국무 조정실	○ 정부 대응방향 제시 ○ 비상대책 시행 등 범정부 대응활동 조정
시도 및 시군구	○ 시·도, 시·군·구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 ○ 방역인력 보강 ○ 실험실 진단체계 강화 ○ 격리시설 확보 및 활용 ○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검토

② 주요 조치내용(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국내외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보고·전파
- 질병관리본부장이 경계 단계의 위기징후 포착 및 위기상황을 접수받은 경우, 상황파악 후 동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차관에게 보고(필요시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 회의 소집
 - 경계 단계의 위기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협 또는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자체위기평가회의」 운영
- 위기상황 평가 및 대응전략 검토
 -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외 여론, 정부의 대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위기경보 발령 및 보고·통보
 - 위기상황 분석·평가 후, 위기경보수준(주의 유지 또는 경계 상향)이 결정되면, 위기평가회의 의장(공공보건정책관)은 동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차관에게 보고한 후 발령
 - 질병관리본부장은 위기발령시(경계 상향) 신속하게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국민안전처(재난관리총괄과, 사회재난대응과) 및 시·도 등 유관기관에 통보

(경계단계)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조치

-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운영 준비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 운영 강화

- 국내외 발생상황 점검 및 동향 보고
- 방역 대응태세 및 인프라 적극 가동
 - 비상방역체계 강화(전국 방역요원 24시간 비상체제돌입 등)
 -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강화(의료기관 대상)
 - 외래 및 입원 진료체계 강화
 - 실험실 진단체계 강화
 - 역학조사 체계 강화
 - 시설(감염병관리시설) 지정
 - 비축물자(예방·치료약품, 개인보호구 등) 지원 및 추가 확보대책 마련
-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국민동요방지 및 감염예방 대국민 홍보
- 인력(방역요원, 검역요원 및 의료진 등) 운용 대책 마련

(4) 심각 (Red)

① 징후 및 기관별 임무/역할

구 분		내 용
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신종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 국내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 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기관별 조치 내용	보건 복지부 (질병관 리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중앙방역대책본부 포함) ○ 상황 모니터링 및 위기경보 발령 ○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운영강화 지속 ○ 국가 모든 가용자원 파악 및 동원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제59조 지도명령권 발동을 통한 의료인 동원 - 역학 조사관 추가 총원 및 동원 - 격리병상 추가확보 ○ 대국민 홍보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영·민간 방송을 통한 비상속보 및 자막방송 실시 - 선전성 보도 및 오보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 지속적 언론모니터링으로 국민 및 언론 등 여론 파악

구 분		내 용
	국민 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 ○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사항을 유관부서 및 지자체 등에 통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체계 구축 - 언론브리핑, 담화문 발표 등 대국민 홍보체계 구축 (주관부처와 협조) 등 ○ 지방자치단체에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중앙소방본부) ○ 감염병 환자 이송체계 가동 지원 강화 ○ 감염병 환자 이송 정보 주관기관 신속 전파 (해양경비안전본부) ○ 항만을 통한 출입자 통제 및 질서유지
	농림축산 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 종식을 위한 가축방역활동 강화 지속 ○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동물 이동 경로·확산속도 검토를 통한 야생동물 집단 서식지 출입통제, 포획 등 대응 관리
	기획 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감염병대응 예산(예비비) 편성 및 지원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감염병 정보 수집 및 국내 감염병 동향 해외 전파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인력 및 시설지원(군의원, 간호장교 등 필수인력 지원) ○ 군 인력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학원 등 감염병예방관리 ○ 학교 휴교·휴업 및 학원 휴원 검토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국인 출입국기록 제공 등 지원
	국토 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감편 내지 운항 조정 ○ 항공 종사자, 여행객에 대한 방역 활동 계속 ○ 철도, 대중교통, 화물 등 종사자, 승객에 대한 방역 활동 및 운행제한
	해양 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선 감편 내지 운항 조정 및 외국인 선원 출입국 제한 등 ○ 선박 종사자, 여행객에 대한 방역 활동 계속 ○ 선박 운행제한
	문화체육 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체육, 관광 관련 대규모 행사 금지 조치 ○ 국내외 여행상품 판매자제 조치

구 분		내 용
	산업통상 자원부	○ 기업 업무지속계획(BCP) 가동
	고용 노동부	○ 근로자에 대한 감염병 관리 및 홍보·교육
	식품의약 품안전처	○ 감염병 치료제 등 지속 생산 독려
	경찰청	○ 국가필수시설(비축물자 보관·관리 시설 등) 경비 ○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사회 질서유지 ○ 인력지원 및 예방관리(전·의경 포함) ○ 환자 등 추적 조사자 주소지 제공
	국가 안보실	○ 위기정보·상황종합관리,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링 ○ 경보 관련 협의
	국무 조정실	○ 정부 대응활동 종합점검·평가 및 협의·조정
	시도 및 시군구	○ 시·도 시·군·구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운영 ○ 방역인력 보강 ○ 실험실 진단체계 강화 ○ 격리시설 확보 및 활용 ○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검토

② 주요 조치내용(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국내외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보고·전파
- 질병관리본부장이 심각 단계의 위기징후 포착 및 위기상황을 접수받은 경우, 상황과약 후 동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차관에게 보고(유관기관에 상황 전파)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 회의 소집
 - 심각 단계의 위기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협 또는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자체위기평가회의」 운영

- 위기상황 평가 및 대응전략 검토
 -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의 여론, 정부의 대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위기경보 발령 및 보고·통보
 - 위기상황 분석·평가 후, 위기경보수준이 결정되면, 위기평가회의 의장(공공보건정책관)은 동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차관에게 보고
 - 장·차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국민안전처(재난관리총괄과, 사회재난대응과)**와 사전 협의하에 경보 발령 및 시·도 등 유관기관에 통보

(심각단계)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조치

-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운영
- 국내외 발생상황 점검 및 동향 보고
- 방역 대응태세 및 인프라 적극 가동 강화
-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국민동요방지 및 감염예방 대국민 홍보
- 인력(방역요원, 검역요원 및 의료진 등) 운용 대책 마련
- 필요시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요청

위기경보 해제

- 회의 소집
 - 경보 하향 조정을 위한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후 심각 →경계, 경계→주의/관심으로 하향 조정, 위기평가회의 의장이 장·차관에게 보고한 후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장이 발령

3. 대 응

가. 중점

- ◆ 대규모 환자 발생억제, 전국적인 확산차단을 위한 총력동원 체계 가동
- ◆ 환자나 사망자 발생을 차단하고, 조속한 위기상황 종식으로 국민건강 보호와 사회·경제적 손실 최소화

나. 세부 활동내용

- (1) 범정부적·범국가적 총력 대응으로 위기상황을 조기에 식별하고 신속하게 대응
- (2) 지역별 환자 발생에 따른 차별화 전략 및 대응 매뉴얼 시달
- (3) 동원가능한 모든 자원 동원
 - 진료의료진 현장 동원 명령 및 진료이탈 금지
 - 격리병원 추가 확보 및 보호장구·방역약품 대대적 보급
- (4) 방역 및 검역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체인력 확보 및 투입으로 위기상황에 대응
 - 공중보건요원, 군의관, 군 간호사 등 필수인력 추가 동원
- (5) 위기극복을 위한 전 국민동참을 위해 홍보활동 강화 등을 통해 대응능력 배양 및 국민의 불안심리 해소 노력

다. 위기유형별 기관의 임무·역할

(1)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구 분	내 용
상황 개요	○ 해외에서 신종감염병 유입 및 국내 확산
기관별 조치 내용	<p>○ 위기상황 평가 및 위기경보 발령</p> <p>○ 각 기관별 비상방역 가동 협조체계 준비</p> <p>○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p> <p><질병관리본부></p> <p>○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p> <p>- 대책본부 구성 운영 및 범정부적 협조체계 구축 (필요시 관련 협조기관 업무지원)</p> <p>- 협조기관 업무지원(필요시)</p> <p>○ 위기상황 평가 및 상황모니터링</p> <p>○ 국가 방역체계 활동 강화</p> <p>※ 전국 방역요원 24시간 비상 방역체제 등</p> <p>○ 국가 방역·검역 인력 보강 검토</p> <p>○ 치료제 등 비축물자의 수급체계 적극가동</p> <p>○ 실험실 진단체계 운영 및 변이주 감시 강화</p> <p>○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및 언론 브리핑</p> <p>○ 언론모니터링 지속</p> <p>- 국민과 언론 등 여론 파악</p> <p>-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p>
	<p>○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p> <p>○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사항을 유관부서 및 지자체 등에 통보</p> <p>○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필요시)</p> <p>(중앙소방본부)</p> <p>○ 감염병 환자 이송체계 가동 지원 강화</p> <p>○ 감염병 환자 이송 정보 주관기관 신속 전파</p> <p>(해양경비안전본부)</p> <p>○ 검역, 밀항자 격리 등</p> <p>○ 항만을 통한 출입자 통제 및 질서유지</p>
	<p>농림축산 식품부</p> <p>○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 종식을 위한 가축방역활동 강화</p> <p>○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p>
	<p>환경부</p> <p>○ 야생동물 서식지 및 주변지역 출입 통제</p>

구분	내용
기획재정부	○ 국가 감염병대응 예산(예비비) 편성 및 지원
외교부	○ 해외 감염병 정보 신속 입수 및 전파 ○ 감염병 발생 국가의 재외국민에 대한 예방 교육
국방부	○ 군 인력 지원 및 군병원 활용 협조 ○ 군 인력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부	○ 학교 및 학원 등 감염병 예방관리 ○ 학교 휴교·휴업 및 학원 휴원 검토
법무부	○ 내·외국인 출입국기록 제공 등 지원
국토교통부	○ 항공기 감염 내지 운항 조정 등 ○ 항공 종사자, 여행객에 대한 방역 활동 ○ 철도, 대중교통, 화물 등 종사자, 승객에 대한 방역 활동
해양수산부	○ 여객선 감염 내지 운항 조정 및 외국인 선원 출입국 제한 등 ○ 선박 종사자, 여행객에 대한 방역 활동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 업무지속계획(BCP) 가동 준비
고용노동부	○ 근로자에 대한 감염병 관리 및 홍보·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 감염병 치료제 등 신속 허가검정 ○ 감염병 유발 의심 (수입)식품 검사
경찰청	○ 국가필수시설(비축물자 보관·관리 시설 등) 경비 지원 ○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지원으로 사회 질서유지 ○ 가용 범위 내 인력지원 및 전·의경 감염병 예방관리 ○ 환자 등 추적 관리 대상자 거주여부 확인 요청 시 협조
국가안보실	○ 위기정보·상황종합관리,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링 ○ 경보관련 사전협희
국무조정실	○ 정부 대응방향 제시 ○ 비상대책 시행 등 범정부 대응활동 조정
시도 및 시군구	○ 시·도, 시·군·구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 ○ 방역인력 보강 ○ 실험실 진단체계 강화 ○ 격리시설 확보 및 활용 ○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검토

(2) 국내 신종 감염병 발생 및 확산

구 분		내 용
상황 개요		○ 국내에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
기 관 별 조 치 내 용	보건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 평가 및 위기경보 발령 ○ 각 기관별 비상방역 가동 협조체계 준비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질병관리본부> ○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책본부 구성 운영 및 범정부적 협조체계 구축 (필요시 관련 협조기관 업무지원) - 협조기관 업무지원(필요시) ○ 위기상황 평가 및 상황모니터링 ○ 국가 방역체계 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방역요원 24시간 비상 방역체제 등 ○ 국가 방역·검역 인력 보강 검토 ○ 치료제 등 비축물자의 수급체계 적극가동 ○ 실험실 진단체계 운영 및 변이주 감시 강화 ○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및 언론 브리핑 ○ 언론모니터링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과 언론 등 여론 파악 -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
	국민 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 ○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사항을 유관부서 및 지자체 등에 통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필요시) (중앙소방본부) ○ 감염병 환자 이송체계 가동 지원 강화 ○ 감염병 환자 이송 정보 주관기관 신속 전파 (해양경비안전본부) ○ 검역, 밀항자 격리 등 ○ 항만을 통한 출입자 통제 및 질서유지
	농림축산 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 종식을 위한 가축방역활동 강화 ○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환경부	○ 야생동물 서식지 및 주변지역 출입 통제
	기획 재정부	○ 국가 감염병대응 예산(예비비) 편성 및 지원

구 분	내 용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감염병 정보 신속 입수 및 전파 ○ 감염병 발생 국가의 재외국민에 대한 예방 교육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인력 지원 및 군병원 활용 협조 ○ 군 인력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학원 등 감염병 예방관리 ○ 학교 휴교·휴업 및 학원 휴원 검토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국인 출입국기록 제공 등 지원
국토 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감염 내지 운항 조정 등 ○ 항공 종사자, 여행객에 대한 방역 활동 ○ 철도, 대중교통, 화물 등 종사자, 승객에 대한 방역 활동
해양 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선 감염 내지 운항 조정 및 외국인 선원 출입국 제한 등 ○ 선박 종사자, 여행객에 대한 방역 활동
산업통상 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업무지속계획(BCP) 가동 준비
고용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에 대한 감염병 관리 및 홍보·교육
식품 의약품 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치료제 등 신속 허가·검정 ○ 감염병 유발 의심(수입)식품 검사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필수시설(비축물자 보관·관리 시설 등) 경비 지원 ○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지원으로 사회 질서유지 ○ 가용 범추적 관리 대상자 거주여부 확인 요청 시 협조
국가안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정보·상황종합관리,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링 ○ 경보 관련 사전 협의
국무 조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대응방향 제시 ○ 비상대책 시행 등 범정부 대응활동 조정
시도 및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시·군·구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 ○ 방역인력 보강 ○ 실험실 진단체계 강화 ○ 격리시설 확보 및 활용 ○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검토

4. 복구

가. 중점

- ◆ 위기 상황시 시행한 대응조치에 대한 평가
- ◆ 유사사례 재발시 대응조치에 대한 보완

나. 세부 활동내용

- (1) 감염병 분야 위기기간 중 발생한 각종 피해사례의 종합 및 복구 대책 마련·시행
- (2) 감염병 위기대응 조치 평가
 - 비상 대응조직 및 관계 기관간 협조체제 평가
 - 위기수준 및 단계별 조치사항 평가
 - 국민들의 대응능력 및 인식변화 모니터링
- (3) 지속적인 감염병감시 및 국가 방역의 선진화 방안 강구
- (4) 인력, 시설, 장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방안 강구
- (5) 해외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선진방역시스템 도입과 국외 발생동향 지속감시
- (6) 유사사례 대응을 위한 국가 방역인프라 보완,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 등

다. 기관별 임무·역할

구 분	내 용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관리 대응에 대한 총괄 평가 ○ 국가 방역제도 개선 및 선진화 방안 강구 <p><질병관리본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대응별 조치사항에 대한 평가 및 보완 강구 ○ 감염병 발생지역 재유행 대비 감시 및 진단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발생동향에 대한 지속적 정보수집 ○ 검역장비, 비축물자, 진단시약 비축·관리 ○ 전국 방역요원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
국민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관리체계 조사·분석 및 평가 (중앙소방본부) ○ 감염병 환자 이송체계 가동 평가 및 보완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위한 가축방역활동 체계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매개가축에 대한 관리 및 대책 강구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위한 야생동물 관리활동 체계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새 등 이동성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 및 국제협력 강화 등 대응책 강구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 복구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 방역 인프라 구축 예산 지원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감염병 발생동향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전파 ○ 국내 성공적인 감염병관리 사업에 대한 국외 홍보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위기복구에 대한 홍보
국가안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정보·상황종합관리,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링
국무조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관리 대응정책 총괄 평가 및 보완 ○ 위기관리 관련기관 협조체제 평가 및 보완
시도 및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별 조치사항에 대한 평가 및 보완

**V. 중앙사고수습본부
즉시가동 준비사항 및
본부장 역할**

1. 즉시가동을 위한 단계별 사전준비 사항

가.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전 조치사항

(1) 예방단계

- 국가 감염병 유행 대비 대응체계 및 감염병관리 인프라 구축
- 감염병 감시체계 가동
- 예방 치료약품등 국가 의료자원 비축
- 감염병 대응 매뉴얼 수립 및 교육 훈련을 통한 위해관리 강화
- 국민에 대한 감염병 주의 정보제공 및 홍보 활동
- 예방 접종률 향상을 통한 국민 면역력 제고

(2) 관심단계

-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 모니터링 및 상황 보고·전파
- 감염병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가동
- 국가방역 인프라 가동 준비태세 점검
- 감염병 환자 이송 및 진료체계 점검, 구축
- 전국 방역요원 비상 연락망 점검
- 유관기관 상호 협력 조정 체계 구축
- 신속 감별 진단을 위한 실험실 진단체계 구축
- 감염병 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

(3) 주의단계

-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운영 등 정부 비상대응체계 가동
- 위기경보발령
- 국가방역 인프라 가동
- 국민 예방접종 시행
- 감염병 환자 감시체계 및 치료대응체계 강화
- 실험실 진단체계 강화
- 감염병 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 지속 및 언론 브리핑
-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4) 경계단계

-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강화
-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
- 상황모니터링 및 위기경보 발령
- 국가방역체계 활동 강화(전국 병원 24시간 비상체계 운영)
- 국가방역인프라(치료제 등 비축물자) 수급체계 적극 가동
- 실험실 진단체계 운영 및 변이주 감시 강화
-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시 조치사항

(1)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 상황모니터링 및 위기경보 발령

-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운영
- 국가 모든 가용자원 평가 및 동원 방안 마련
- 지속적 언론 모니터링 및 대국민 홍보
- 관련 중앙부처(실무매뉴얼 관리부서) 공무원 상황실로 파견 요청

(2) 종합상황실 가동

- 총괄반, 의료자원관리반, 홍보관리반, 대외협력반 구성 운영
- 현장사고 대응·수습 현황 모니터링 및 내부 보고체계 유지

(3)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협조요청

- 인력·장비·물자 동원, 당해 지역 공무원 비상 소집, 합동 조사(민간전문가, 유관부처) 등 협조요청

2. 즉시가동을 위한 조치목록별 사전준비 사항

□ 조치목록별 점검사항(안전행정부 예시 활용)

순번	조치 목록	세부내용
1	초동대응	○ 시도 및 시군구, 유관기관 119 등과 협조체계 구축 ○ 특별행정기관의 초동조치/ 자력 초동조치
2	초기대응태세 확립 (중앙부처 및 지자체)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긴급대피, 긴급복구, 출입 통제(경찰), 국민행동요령 배포, 비상근무, 임시 숙소 지원 등 응급조치
3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 행정부처 공무원 비상근무 발령 ○ 관련 중앙부처(실무매뉴얼 관리부서)공무원 상황 실로 파견요청 ○ 초동대응 및 사고수습
4	상황실 가동	○ 비상근무자 편성, 근무요령 교육 ○ 상황전파기관과 연락체계 유지 : 수시 상황전파 ○ 재난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물자 확인
5	재난(사고)발생상황 보고·전파	○ 인적재난(사고)발생시 국가안보실, 안전행정부, 관계 종합 행정기관, 지자체, 특별행정기관에 신속한 상황보고 및 전파(서면, 전화)
6	자체위기평가회의 (상황판단회의) 개최	○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속도, 파급 효과 파악 ○ 국내외 여론 등 고려 위기경보 발령 및 대응·대책 마련 ○ 범정부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수준의 심각경보 발령시 국가안보실 및 안전행정부 사전협의 (매뉴얼에 따라)
7	현장사고수습본부 가동	○ 특별행정기관을 통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협조체계 가동 ○ 유관기관, 지자체, 특별행정기관 담당자 파견요청 ○ 사고수습, 응급복구, 구조·구급 지휘 ○ 현장상황 중앙사고수습본부·지자체·관련기관 보고·전파 ○ 관련공무원, 전문가 파견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협조요청	○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안전행정부)에 수습 협조요청 ○ 소속공무원 중대본 파견 ○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전검토 ○ 재난합동조사단 파견 요청

9	재난상황 언론홍보· 대응팀 가동 및 취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위기)상황 전파 및 지원요청(부·처 대변인실) ○ 재난상황 언론브리핑 실시 ○ 현장 대변인 지정·운영 ○ 언론사 취재활동 지원
10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점검 및 재난정보 자료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발생 대응시 협조 할 유관기관(중앙·지자체· 산하기관 등)의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등 비상 연락망 점검 ○ 과거 유사사례 재난발생 정보자료 파악 등

3.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역할

□ 개요

- 감염병 위기관리 총괄
- 감염병 사고수습 총괄
-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 예방 및 대비단계

-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 감염병관리 기본계획 정비
- 감염병 대비·대응 수습훈련 총괄
 - 사고수습훈련(토의형, 현장),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가동
- 감염병 발생 사전 예방 총괄
 - 관련 법령·법규 제개정
 - 검역, 감시, 환자관리, 진단 및 의료비축물자 등 감염병관리 인프라 구축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참석

□ 대응단계

- 감염병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총괄
 - 감염병 발생 시, 초기 보고상황 및 자체위기평가회의 결과 점검
 - 감염병 위기대응·수습을 위한 위기경보 발령, 변경 및 해제
 - 위기수준이 심각단계인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유관기관 사고수습 협력
 - 중앙사고수습본부 종합상황실 점검 및 대책 지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공조 총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사고수습 사전협의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사고수습 협력 당부
 - 소속 공무원 연락관 파견
- 언론보도 및 대국민 홍보 총괄
 -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정확한 대국민 전파
 - 피해수습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로 국민 불안 해소

□ 복구단계

- 감염병 발생 사후 영향조사 총괄
 - 감염병 발생 주변지역 주민건강조사 및 범정부적 복구 지원대책 마련
 - 감염병 발생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 재난복구 협력 총괄

VI. 부록

VI. 부 록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감염병 예방은 ..

- 평소에도 손을 자주,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어야 합니다.
 - 손을 씻어야 하는 때 : 외출 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온 후, 조리하거나 식사하기 전, 화장실 사용 후, 기침이나 재채기 후 등
- 식수는 반드시 끓였거나 병에 든 물(생수)을 드셔야 합니다.
 - 이외 요리시, 설거지시, 손을 씻거나 양치시 등에도 안전한 물, 소독된 물 사용 권고
- 채소류 등 식재료는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고, 충분히 가열하여 드셔야 합니다.
 - 특히, 여름철 조리 음식 보관 금지, 오염된 물에 닿았던 음식 섭취 금지,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색깔, 모양 등이 변한 음식물 섭취 금지
- 도마, 칼 등은 식품별 구분하여 따로 사용하고, 사용 후 깨끗이 씻고, 잘 말려서 사용해야 합니다.
 - 설사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조리 금지
 - 특히,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진료 권고
-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나 손수건, 옷 소매 이용 입 가리기 등 기침 에티켓을 지키고 기침이 계속된다면 마스크를 착용을 권장합니다.
- 손으로 가급적 눈, 코, 입 만지는 것을 피하고, 집안 실내 등은 청결히 하고 환기를 자주 시킵니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막힘)이 있을 때에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고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의 외출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염병 증상이 나타날 때는 ..

- 설사,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고위험군(5세 이하, 65세 이상,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경우 즉시 진료 권고
- 해외 여행객은 귀국시 발열, 호흡기 증상,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건강상태 질문서에 성실히 기재하고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손씻기 요령 ..



2. 재난발생시 초기대응 주요 사항

재난사태의 선포·선포 건의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개 시·도 이하의 재난상황인 경우 사태를 직접 선포할 수 있으며, 3개 시·도 이상의 재난상황인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장에게 사태선포 건의

응급조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시·도 및 시·군·구)은 재난시 소방, 진화, 구조, 구난, 경보발령, 피난권고(지시), 시설복구, 방역, 긴급구조 및 수송,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 확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재난의 예보·경보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시 예보, 경보 등을 위해 통신시설 우선사용, 방송시설 사용, 신문 및 인터넷 게재 등 요청할 수 있음

동원명령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시 민방위대 동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 물자, 장비 등 동원과 군부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대피명령·위험구역의 설정·강제대피·통행제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① (대피명령) 해당지역의 주민, 선박, 자동차 등에 대한 대피명령
- ② (위험구역 설정) 필요시 위험구역의 설정, 출입제한 등의 조치
- ③ (강제대피) 대피명령의 불이행이나 위급성이 판단되면 위험 구역안의 주민을 강제대피 및 퇴거조치, 관할 경찰서장의 지원 요청
- ④ (통행제한) 응급조치를 위한 물자의 수송, 구조 등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차량의 통행금지 등 요청

시·도지사의 응급조치

재난시 대피명령, 위험구역설정, 강제대피, 통행제한 등 조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응급조치

재난시 소관업무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함

3. 감염병 분야 위기사례

가. '08년 조류인플루엔자 유행

일 시	'08.4.1.~'08.5.14.
장 소	전북 김제 등 11개 시·도, 19개 시·군·구
피해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개 농장에서 발생 ○ 670개 농가 8,138천수 살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천여명 살처분 참가
주요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인체감염 대책반」 구성 ○ AI 인체감염예방 현장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처분자 등 고위험 노출자에 대한 예방투약, 보건교육, 개인보호구 지급으로 인체감염 차단 ○ AI 인체감염 감시망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플루엔자 감시망, 응급실 감시망, 지역사회 폐렴감시망 등을 AI 환자감시망으로 통합 운영 ○ 인체감염 확인을 위한 실험실 진단 ○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국민 홍보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노출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인체감염 사례없이 유행 종식 ○ 신속대응반의 적극적 운영으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 ○ 질병관리본부 「질병통제 전략상황실」의 효율적 운영으로 유기적 지휘체계 유지 ○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로 효율적 의사 결정 ○ 불필요한 불안감 확산으로 닭소비가 감소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 필요성 확인 ○ 대도시, 소규모 농장, 재래시장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발생시 초기대응에 어려움 ○ 환자후송, 격리조치 등 구체적 사례에 대한 매뉴얼 필요성 대두

나. 대형 급식업체에 의한 대규모 집단설사환자 발생

일 시	○ '06. 6. 16~6. 23																										
장 소	○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26개 중·고교, 관공서 급식소																										
피해현황	○ 수도권 지역 총 26개 학교 학생 2,922명(폭로자 30,434명)의 집단설사환자 발생																										
기관별 주요역할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역 할</th> </tr> </thead> <tbody> <tr> <td>시·군·구</td> <td>보건소</td> <td>○발생보고, 역학조사, 결과보고</td> </tr> <tr> <td rowspan="2">시·도</td> <td>보건위생(정책)과</td> <td>○발생 및 결과보고 취합, 시군구 역학조사 지도 및 지휘</td> </tr> <tr> <td>보건환경연구원</td> <td>○인체검체 실험실 검사·지하수 수질검사 등</td> </tr> <tr> <td rowspan="3">질병관리본부</td> <td>전염병관리과</td> <td>○2차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병대응조치 ○상부기관 보고</td> </tr> <tr> <td>역학조사과</td> <td>○중앙역학조사반 역학조사 실시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 기술지원 ○역학조사 결과분석 및 결과보고</td> </tr> <tr> <td>간염폴리오바이러스과</td> <td>○인체검체 및 지하수 바이러스 시험(유전자형 분석 포함)</td> </tr> <tr> <td rowspan="3">관련 부처</td> <td>식품의약품안전청</td> <td>○식품수거 및 식중독균 검사</td> </tr> <tr> <td>교육과학기술부</td> <td>○역학조사 협조</td> </tr> <tr> <td>환경부</td> <td>○노로바이러스 시험을 위한 지하수 전처리</td> </tr> </tbody> </table>		구 분		역 할	시·군·구	보건소	○발생보고, 역학조사, 결과보고	시·도	보건위생(정책)과	○발생 및 결과보고 취합, 시군구 역학조사 지도 및 지휘	보건환경연구원	○인체검체 실험실 검사·지하수 수질검사 등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과	○2차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병대응조치 ○상부기관 보고	역학조사과	○중앙역학조사반 역학조사 실시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 기술지원 ○역학조사 결과분석 및 결과보고	간염폴리오바이러스과	○인체검체 및 지하수 바이러스 시험(유전자형 분석 포함)	관련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수거 및 식중독균 검사	교육과학기술부	○역학조사 협조	환경부	○노로바이러스 시험을 위한 지하수 전처리
	구 분		역 할																								
	시·군·구	보건소	○발생보고, 역학조사, 결과보고																								
	시·도	보건위생(정책)과	○발생 및 결과보고 취합, 시군구 역학조사 지도 및 지휘																								
		보건환경연구원	○인체검체 실험실 검사·지하수 수질검사 등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과	○2차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병대응조치 ○상부기관 보고																								
		역학조사과	○중앙역학조사반 역학조사 실시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 기술지원 ○역학조사 결과분석 및 결과보고																								
		간염폴리오바이러스과	○인체검체 및 지하수 바이러스 시험(유전자형 분석 포함)																								
관련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수거 및 식중독균 검사																									
	교육과학기술부	○역학조사 협조																									
	환경부	○노로바이러스 시험을 위한 지하수 전처리																									
평 가	○ 금번 유행이 ○○업체에 의해 발생한 것을 확인한 당일, - 서울시교육청은 ○○업체가 제공하는 40개교 급식 잠정중단																										
	○ 식약청은 ○○업체 4개 물류센터에서 납품하는 73개교 급식중단 조치를 하고, 기업체 등 총 436개 집단급식소 납품 식자재 중 문제 식자재 공급 중단																										
	○ 금번 대형급식업체 관련, 감염병예방관리 조치를 함에 있어관계 부처간 업무중복기능이 표출되어 기관간 명확한 업무분담 및 의사소통의 상시적 운영 필요성이 제기됨																										
	○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발생이 매우 취약한 곳임. 따라서 무엇보다 각급 학교의 자율적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집단설사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에 신속한 신고와 역학조사시 적극적인 협조 필요																										
	○ 감염병관리 당국에서도 유치원,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단체생활을 하는 기관대상 감염병예방홍보활동의 활발한 전개가 필요함																										

다. '09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일 시	'09.4.28.~'10.4.1.
장 소	국내 16개 시·도 및 해외국가
피해현황	○ '09.5.2일 첫 확진환자 발생 이후 '09.9.20일까지 15,160명의 확진환자 확인. '10.6.12일까지 총 263명의 사망자 발생
주요조치	○ 신종인플루엔자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각 지자체 대책본부 구성 ○ 입국자 발열감시, 위험지역 입국자 및 확진환자 동승객 전화추적조사 ○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체계 확대운영 및 내성주·변이주 감시 ○ 환자관리 - 유행초기 국가격리병원 격리 및 항바이러스제 투여 ○ 신종인플루엔자 치료대응체계 구축 - 의약품, 장비 추가비축 및 치료 거점의료기관 운영 -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지침' 및 세부지침 개발, 배포 ○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확인을 위한 실험실 진단 ○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국민홍보 - 대국민 행동요령 및 각종 안내문 배포, 콜센터 운영 ○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평 가	○ 국가 역량의 총체적 동원 - 범정부적인 협조체계를 통한 정부의 역량 집결 - 의료단체와 전문가가 적극 참여하는 협조체계 ○ 장기간 신종인플루엔자 대비조치의 산물 -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계획('06년), 항바이러스제 비축, 국가격리병상 확보, 백신공장 건립, 인플루엔자 감시체계 구축, 공중보건위기대응과 신설 등 ○ 새로운 감염병관리체계의 도입을 통한 대응 - 항바이러스제 배분체계, 거점병원 지정, 항바이러스제 투약관리시스템,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개발 등

4.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 목 표

- 정부가 위기에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구조 활동을 지원하며 △피해자를 배려하는 한편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정부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있음

□ 단계별 점검사항

위기 단계	공보업무 점검사항
위기 대비 평소 준비사항	언론사 및 기자 명단 보유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에 따른 교육, 훈련
	재난 예방 및 보도에 관한 언론 협조사항 숙지
위기발생	본부 및 현장에 취재지원센터(브리핑실) 설치
	대변인 지정 및 공보지원반 구성
	기자 연락
	브리핑 준비 및 실시(관계부처 협의)
	보도자료 배포
	여론모니터링 : 오보, 유언비어 파악 및 브리핑 보도 현황 점검
	재난방송협의회 운영
	접근제한선(폴리스라인) 설치 요청
	주관방송사와 국가기간 통신사 활동 협력, 지원
	홍보 전문 부서(국민소통실)와 협력
위기진행	언론의 정보 요구사항 파악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 (관계부처 협의)
	오보 및 유언비어 대응
	온라인 소통 협력 체계 구축 및 SNS 활용 정보 공유
	공동취재단 구성 및 언론 현장 취재지원
	기관장, 전문가 등 브리핑 추진
위기종료	결과 브리핑
	사고 수습에 기여한 인물에 대한 자료 제공
	위기대응 평가 및 사례 자료집 발간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개선 방안 마련

□ 대변인 지정 및 공보지원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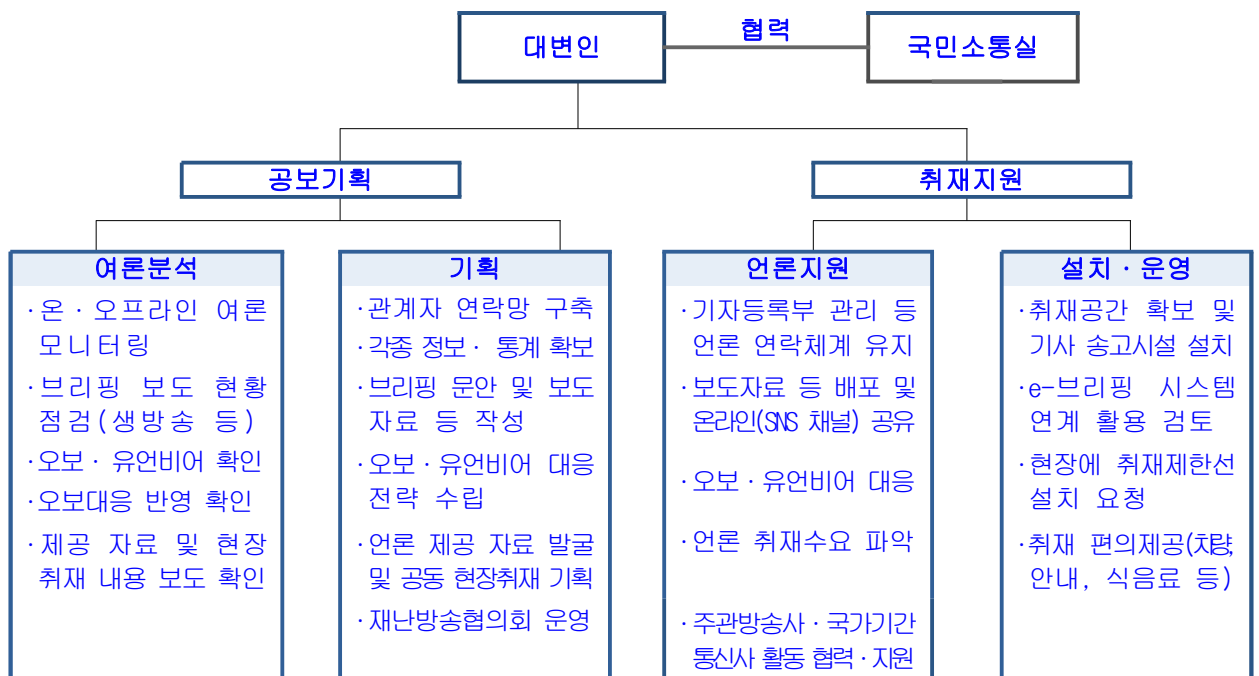
○ 대변인 지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장관)이 지정하는 자(차관 또는 1급 이상 공무원)
-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장관)이 지정하는 자(부처대변인 등 고위공무원)
- 현장: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부기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

○ 대변인 지위·역할

- 대외적으로 유일한 공식 창구
- 위기관련 모든 회의 참석, 상황을 장악하고 관련기관 간 메시지 조율
- 브리핑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홍보 활동 시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변인 : 현장 지원 및 범정부 대책 중심 브리핑
 - 현장 대변인 : 구조 등 수습활동에 대한 상황 중심 브리핑

○ 공보지원반 활동



※ 문체부 소통실 홍보지원 사항

- 홍보협의 위해 현장지휘소-홍보수석실-국조실-문체부(소통실) 간 연락체계 유지
- 홍보지원 사항: △초기 메시지 관리 △여론 모니터링 및 대응 협조 △현장 의문사항 컨설팅 △필요시 취재지원 인력 파견 등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원칙

①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되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브리핑하라

○ 위기사 초기 발표가 정부의 신뢰를 좌우한다.

- 첫 발표는 반드시 확인된 사실만을 발표
- 확신이 없는 사안은 확인해서 알려주고, 추측성 답변이나 주관적 견해, 정보의 부분적 유출은 추후 불필요한 논란과 부정확한 보도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삼가
- ‘현재 파악한 바로는’, ‘잠정’, ‘몇 시 경’, ‘회사측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등의 표현을 사용

※ [첫 발표 예시] “4월16일 오전8시58분 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해상에서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해경이 접수했습니다. 현재 해경 및 관련 기관이 현장에 출동해 구조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다 진전된 사항을 확인하는 대로 수시로 브리핑 하겠습니다”

→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현재로서는 더 이상 답변할 사항이 없습니다. 진전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와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 반드시 문서로 작성한 발표 자료만 브리핑한다.

- 초기에 대변인이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리된 자료만을 기초로 발표하는 것이 원칙

② 창구를 단일화하고 한목소리를 유지하라

○ 여러 채널을 통해 상호 모순되는 정보가 제공되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

- 정보는 반드시 공식 대변인을 통해 전달하고 필요시 대변인 승인 하에 관계자 인터뷰 진행

※ 대변인은 모든 회의에 참석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 상황을 장악

- 정부내에서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여 유지

③ 현장을 질서 있게 관리하라

- 언론의 보도 경쟁이 과열될 경우 공익과 무관한 자극적·선정적 뉴스가 양산되고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 사고 현장에 접근제한선(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엄격하게 통제
- 필요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풀(pool) 기자들이 공보담당자의 인솔 하에 현장을 방문, 취재하도록 안내

④ 최대한 준비한 뒤 언론을 대하라

-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언론 모니터를 통해 여론·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해야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 전체 홍보 상황을 고려해 핵심 메시지, 정부 입장 등을 발표문으로 준비하고 언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미리 정리

⑤ 피해자 등 국민 정서를 항상 염두에 두고 발언, 행동하라

- 위기시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발언이나 행동은 국민적 공분을 낳는다.
-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구분
- 정부 인사의 태도나 행동이 여론의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진지하고 신중한 자세를 유지
- 정부의 입장이 아닌 국민·언론 등 제 3자적 입장에서 메시지를 생각하고 냉정하게 평가

⑥ 언론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라

- 기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 제 3자의 정보에 의존하게 돼 오보 가능성이 높아진다.
- 기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알맞은 정보를 제공해 언론의 정보 수요 충족
- 상황이 허락하고 논란이 없는 사안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안전·보안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취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언론에 충분한 이해를 구함

- 사진·영상 자료 등을 다양하게 확보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시로 제공

⑦ 모든 정보를 공식화하라

- ‘오프더레코드(off the record)’는 지켜지기 어렵고, ‘노코멘트(no comment)’는 문제가 있거나 숨기고 있다는 암시를 준다.

⑧ 오보에는 즉각 대응하라

- 한번 보도되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첫 오보에 대응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오보가 이어진다.
 - 온오프라인 수시 모니터링으로 오보를 신속하게 확인
 - 담당 기자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정정이나 반론 보도를 요구
 - 보도 해명자료를 즉시 배포하고 온라인에 해명 글 게재
 - 명백한 오보임에도 정정보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

⑨ 위기관련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라

- 위기시 언론이 접촉하는 전문가 의견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주요 전문가 및 관련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사건 관련 정보 제공

⑩ 외신 기자 취재 지원 계획을 수립하라

- 외신 보도는 대외적 국가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내외신 보도는 상호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 외신 담당관을 지정해 적극적으로 외신에 대한 취재 지원 실시
 - 브리핑이나 현장 방문 풀(pool) 구성시 외신 기자를 포함

□ 브리핑 및 취재지원 요령

- ① 복장은 정복이나 비상근무복을 착용하라
 - 대변인이 아닌 경우에도 브리핑, 기자회견 참석자는 이 원칙을 준수
 - 여성의 경우에는 화려한 액세서리, 짙은 화장 등 거부감 있는 차림 자제
- ② 브리핑 직전까지 상황을 최대한 파악하라
 -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최신 정보 및 최신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숙지
- ③ 브리핑 전 사전 리허설을 가져라
 - 언론의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언급을 삼가야 할 주제나 용어 파악
- ④ 브리핑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라
 - 기자들의 정보 소외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정보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임
- ⑤ 사람 중심 시각에서 브리핑하라
 - 인적피해는 물적피해에 앞서 언급하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하며 진솔한 애도와 위로를 표명
- ⑥ 쉽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라
 - 전문용어나 업계에서 통용되는 약어 사용을 삼가고 정부 발표를 직접 인용으로 기사화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브리핑
 - 용어로 설명이 어려운 경우 그림·사진 및 영상 등을 함께 제공
- ⑦ 다른 조직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삼가라
 - 다른 조직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 조율 없이 발표하지 않는 것이 원칙
 -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은 상시적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열

고, 핫라인을 통해 입장을 조율

- ⑧ 초기 사고원인, 피해상황에 대한 언급은 신중하게 하라
 - 주관적 판단이 결부된 추측성 답변, 예단하는 발언은 혼란을 부추기고 비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
 - ‘구체적인 사고 원인, 피해상황은 현재 조사 중’,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 등 답변
- ⑨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결론부터 말하라
 - 편집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답변 내용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답변을 한번 더 되풀이
- ⑩ 질문에 얽매이지 마라
 - 질문이 잘못된 사실이나 가정을 전제로 한 경우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
 - 확인 요구 등 답변이 곤란한 경우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등 언급
- ⑪ 발표시마다 정부의 위기대응 조치가 진전되고 있음을 보이라
 -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조치가 상황에 맞춰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⑫ 인터뷰에서는 간략하게 말하라
 - 방송 인터뷰의 경우 편집되지 않도록 10초 내에 짧게 답변하고 준비되지 않은 돌발 인터뷰는 삼가
 - 한 번 잘못 언급한 말은 지속적으로 방송된다는 점을 명심
- ⑬ 위기대응 활동의 설명에 도움이 되는 인사와 자료를 활용하라
 - 현장 지휘책임자, 기관장 등의 브리핑이나 기자회견 기회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 정보도 함께 제공
 - ※ 세월호 침몰 사고의 경우, 구조에 참여한 해군 잠수요원
- ⑭ 알려질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마라

- 부정적 사안이라 할지라도 기사화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선제적으로 발표, 사정과 맥락을 충분히 설명
- 15 언론의 마감시간을 고려하라
 - 언론의 기사 마감시간(조간 : 오후5시, 석간 오전10시) 이전 자료 배포
 - 방송은 반드시 화면 제작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
- 16 언론을 공평하게 대하라
 - 특정매체에만 정보를 주어서는 안 되며, 취재기자 리스트에 근거해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
- 17 정직이 최우선이다
 - 솔직하고 겸손한 태도로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진정성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5. 재난방송관련 위기상황 전파체계

가. 대국민 위기상황 홍보·전파 체계

(1) 기본방향

□ 위기상황 대국민 전파 지원 요청

○ 재난방송 자막송출(DITS) 요청

- 소관부처 →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 NDMS 상황전파시스템 메시지 작성화면에서 ‘지원 및 협조 사항’에 자막방송 표준문안과 송출기준을 함께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으로 요청

○ CBS 문자메시지 요청

- 소관부처 →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 민방위 관련 CBS 문자메시지 송출은 민방위과로 요청

⇒ 위기발생 시 전파 수단 선택은 상황에 따라 소관부처에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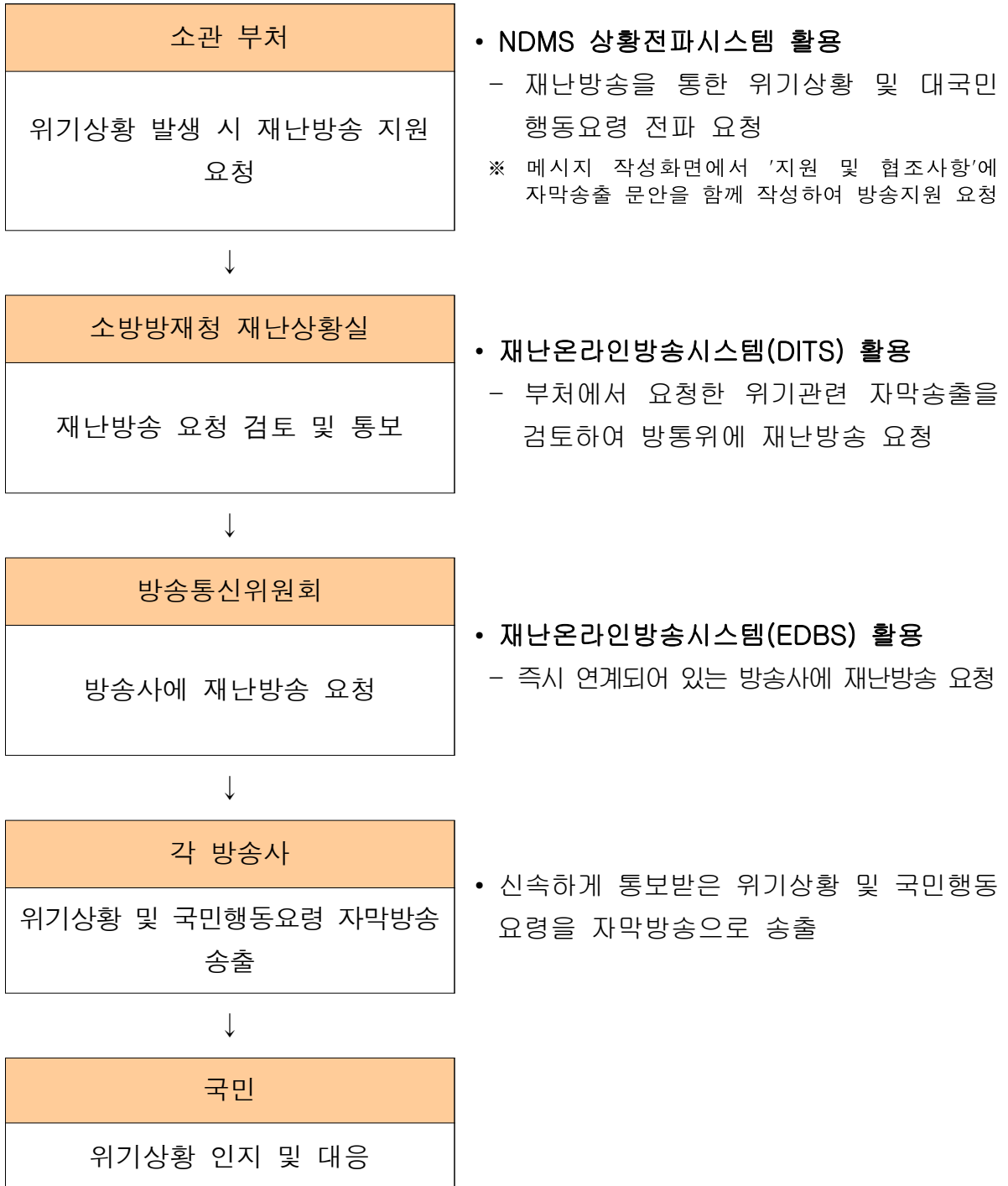
(2) 표준문안 예시

감염병 분야	[보건복지부]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하여 가급적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에 철저하시기 바랍니다.
전력 부족	[산업통상자원부] 한파(폭염)에 의한 전기사용량 급증으로 전력부족 우려, 불요불급한 전기사용을 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정전시	[산업통상자원부] ○○월 ○○일 정전경보, 전력부족으로 전국 대규모정전 우려, ○○.○○일 ○○:○○분부터 순환정전실시 중 정전에 대비바랍니다.
원전 안전 분야	[원자력안전위원회] ○○일 ○○시 ○○분 ○○도 ○○군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 ○ 호기에서 방사선 백색비상을 발령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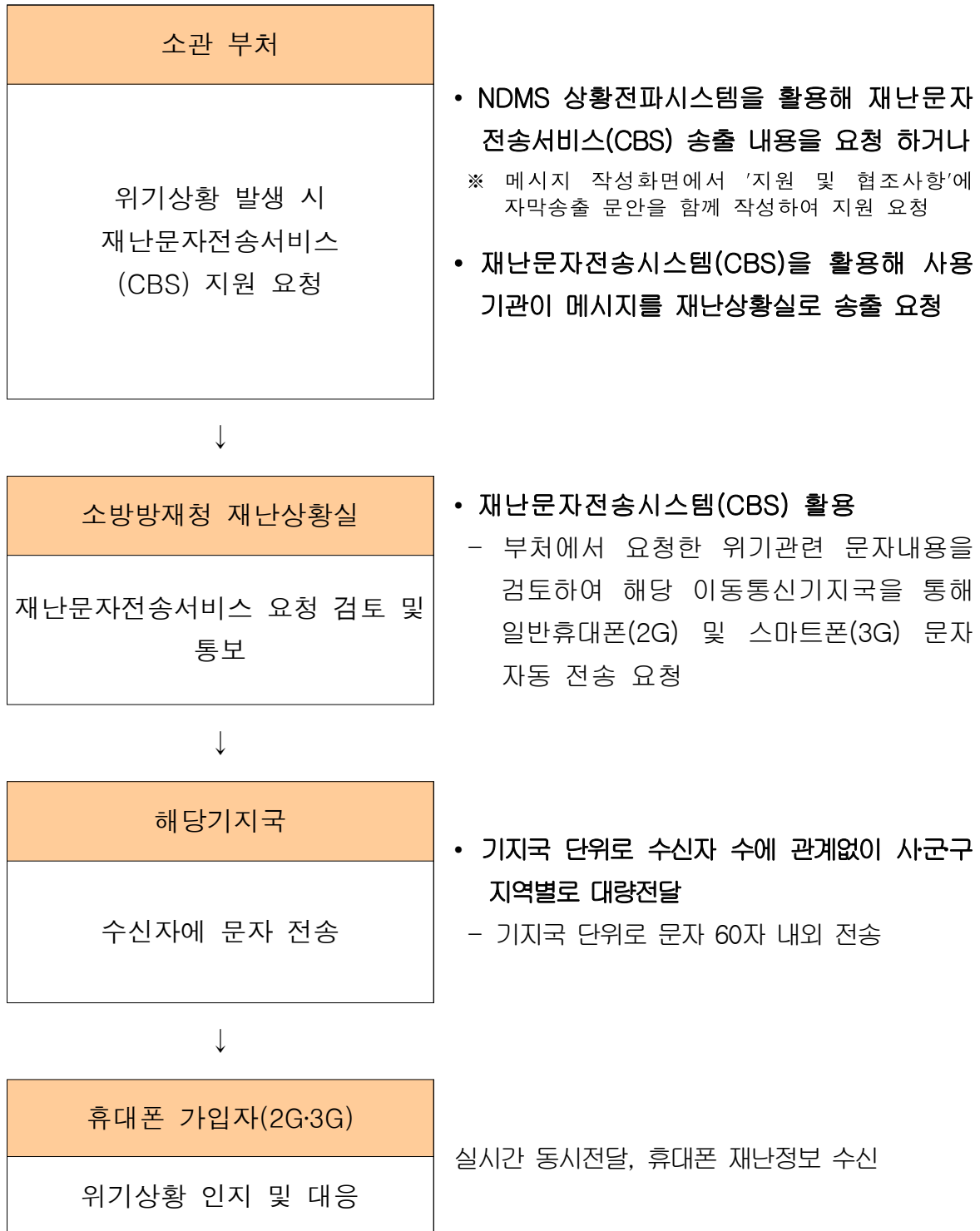
교통 통제	[국토교통부] ○○일○○시부터 ○○구간 차량운행통제, 주변 우회도로를 이용바 랍니다.
항공 운송 장애	[국토교통부] ○○월 ○○일 ○○항공종사자노조 집단 업무거부 돌입예정, 국제선 이용객 항공대란우려 됩니다
해저 케이블 절단	[방송통신위원회] ○○일○○시 지진해일로 인한 해저케이블 절단 사고 발생, ○○ 국과의 국제전화 이용을 자제바랍니다
통신구 화재	[방송통신위원회] ○○월 ○○일 ○○시 ○○지역 통신구화재로 통신케이블 일부 훼손, ○○지역 주민 복구 시 까지 양해바랍니다.
댐붕괴	[국토교통부] ○○일○○시 ○○분 ○○다목적 댐의 붕괴가 발생 하류지역 침수가 예상되니 주민들께서는 신속히 고지대로 대피바랍니다.

나. 위기상황 대국민 홍보·전파 지원요청 방법

(1) 재난온라인방송(DITS) 요청



(2) 재난문자전송서비스(CBS)송출 요청



다. 국가재난관리(NDMS) 상황전파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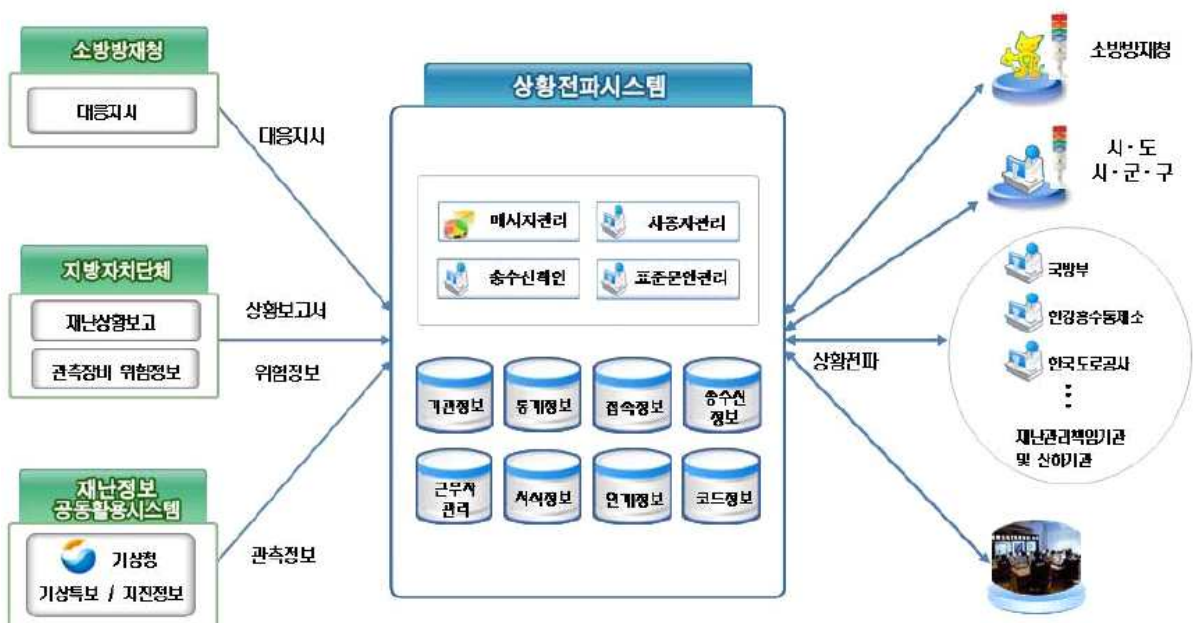
(1) 상황전파시스템 개념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TV 등 재난상황의 실시간 전파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재난 인적재난 등 모든 재난발생 상황전파에 가장 유용한 방법

(2) 상황전파시스템 구축내역

-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 3, 716개 읍면동
- 195개 소방관서 및 16개 시도 교육청
- 137개 중앙부처 및 126개 유관기관(산하기관 포함)

(3) 시스템 개념도



〈 참 고 〉

□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주요 기능

- 365일 24시간 실시간 재난정보 수집, 전파 및 대피조치 등 초동대응
- 국가적 비상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범정부적 대응

(4) 메시지 작성 화면

상황전파시스템 (SITUATION DISPATCH SYSTEM)

메시지관리 / 상황실관리 / 사용자지원 / 집계관리 / 점검실황

공직사항 / 자유게시판 / 자료실 / 재난관련사이트 / 다운로드

재난정보공통통신시스템 >

메시지관리 / 메시지작성

상황전파 > 메시지관리 > 메시지작성

메시지 유형: 업무연락(대동자사) 재난상황보고

재난유형: 자연재난 | 재난유형 선택

수신 구분: 기관 개인

수신처: 수신처지정 승할 당직

발령일시: 2011-12-07 16:35 | 35 | 24시 기준(제, 19:00)

발령장소: 추가보기 산

대(1보) 복 복: 자주쓰는문안 재난종료

공할 | 100 | 가 가 과 가 가 | 는 는 | 문 후 | 발

상황 개요

피해상황: 사람 0명, 차량 0명, 부상 0명, 재산피해 0천원, 기타

발급주최사항: 조치사항
동원사항

지방 및 원조사관

발우 관할 및 대역

전송방법: 경광등: 미작동 작동

문부태형: 문서 태형, 이미지 태형 파일올리기

문서번호: 소방방재청 - 004

문서정보: 발신 기관명 소방방재청 발신 대표명 소방방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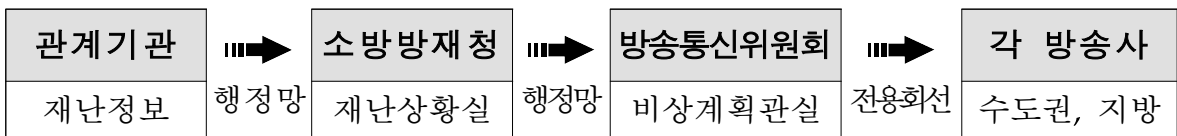
발신자정보: [직급명 선택] | 조경환 | 11 | 11 | 11

라.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DITS)

(1) 개 요

- ‘재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및 ‘재해’(「자연재해 대책법」 제2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상황을 전국 방송사에 실시간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
- 지상파 방송사 등 62개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재난방송을 실시, 기타 사업자는 위원장 요청 시 재난 방송 실시(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2) 시스템 체계



(3) 주요기능

- 재난방송 요청 시, 방통위를 거쳐 방송사로 1분 이내 자동전파
- 전국 또는 국지적 재난별로 해당지역 방송사에 선택적 재난 방송 표출 요청 가능



※ KBS는 지진 등 긴급재난에 대비하여 재난방송 요청시 방송사에서 자막작업을 거치지 않고 확인 버튼만 누르면 바로 TV로 송출될 수 있는 자동자막송출시스템 구축 운영 (2010년부터 시범 운영 중)

6. 관련기관

가. 중앙행정기관

부 처	주무부서	연락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044)202-2506 043)719-7246
국민안전처	사회재난대응과	02)2100-0733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044)201-2378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4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02)2100-7588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6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044)203-6548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02)2110-4037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044)201-3786
해양수산부	비상안전담당관	044)200-5194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	044)203-229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력과	044)203-4228
식품의약품안전처	비상안전담당관	043)719-1647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02)3150-2856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02)770-2335 02)770-2890(야간 상황실)

나. 지방자치단체

시도명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02)2133-7687
부산광역시	보건관리과	051)888-4035
대구광역시	보건정책과	053)803-6284
인천광역시	보건정책과	032)440-2743
광주광역시	건강정책과	062)613-3333
대전광역시	보건정책과	042)270-4851
울산광역시	보건위생과	052)229-3561
경기도	보건정책과	031)8008-2421
강원도	보건정책과	033)249-2435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043)220-3142
충청남도	보건행정과	041)635-4306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063)280-4693
전라남도	보건한방과	061)286-6063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053)950-2427
경상남도	보건행정과	055)211-4963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064)710-2937

다. 산하기관·단체

기관명	연락처
국립인천공항검역소	032)740-2712
국립부산검역소	051)442-5330
국립인천검역소	032)883-7502
국립군산검역소	063)445-4239
국립목포검역소	061)244-0941
국립여수검역소	061)665-2367
국립마산검역소	055)246-2443
국립김해검역소	051)973-6525
국립통영검역소	055)645-3579
국립울산검역소	052)255-4501
국립포항검역소	054)246-8545
국립동해검역소	033)535-6022
국립제주검역소	064)728-5500
대한의사협회	02)794-2474
대한병원협회	02)705-9200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한국방역협회	02)467-7630

라. 실무매뉴얼 작성기관

부 처	주무부서	연락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044)202-2506 (043-719-7246)
국민안전처	사회재난대응과	02)2100-0733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044)201-2378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4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02)2100-7588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6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044)203-6548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02)2110-4037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044)201-3786
해양수산부	비상안전담당관	044)200-519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력과	044)203-4228
식품의약품안전처	비상안전담당관	043)719-1647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02)3150-2856

소관 부서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질병정책과

TEL : 044)202-2506
FAX : 044)202-3928

공중보건위기대응과

TEL : 043)719-7246
FAX : 043)719-7259

※ 본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또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기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